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플레이스

교정 이모저모 ①

교정정책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의 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교정 이모저모 ②

하나 되어 완성한 새로운 시작
거창구치소 개청식

교정 이모저모 ③

교정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역사와 오늘

자율과 책임, 감사와 존중의
아름다운 조화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의 공간

감시와 통제를 넘어
미래 설계의 동반자로
천안개방교도소 보안과

교정 아카이브

교정 포커스 금용명

부산형무소와 근대 행형(하)

교정 논문 윤담

교도관의 교정·교화 개념 인식 분석(상)

교정 리포트 배상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전문가 칼럼 최우진

교정행정 가치와 방향성에 관한 소고

교정 판례 박규연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권리 남용
및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교정 백과 허경미

노르웨이 수용자 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탐색

교정 NEWS

11

2023 November + Vol. 570



11

Contents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교정 이모저모 ① 04

교정정책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의 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교정 이모저모 ② 06

하나 되어 완성한 새로운 시작
거창구치소 개청식

교정 이모저모 ③ 08

교정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역사와 오늘 12

자율과 책임, 감사와 존중의 아름다운 조화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의 공간 18

감시와 통제를 넘어 미래 설계의 동반자로
천안개방교도소 보안과

외부 칼럼 22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교정 포커스 24

부산형무소와 근대 행형(하)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교정 논문 50

교도관의 교정·교화 개념 인식 분석(상)
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팀장

교정 리포트 7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전문가 칼럼 98

교정행정 가치와 방향성에 관한 소고
최우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교정 판례 102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권리 남용 및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박규연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교정 백과 120

노르웨이 수용자 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탐색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정 NEWS 136

모범 공무원 145

독자마당 146



교정정책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의 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교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교정행정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될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0월 출범식을 갖고 활동의 기지개를 켰다.

글 강진우 사진 봉재석



교정정책 자문·제언의 첫발을 내딛다

지난 10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교정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교정정책자문단과 교정개혁위원회를 통·폐합해 새로 출범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교화·심리치료·의료처우·교정시설·인권법률·직업훈련·언론방송 등 교정정책을 둘러싼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외부위원 14명과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보안정책단장 등 내부위

원 2명으로 구성됐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교정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다양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전달하게 된다.

출범식에 참석해 외부위원 14명을 위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교정행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



지 않았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 전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나온 자문과 제언이 교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 목표와 교정현안을 공유한 첫 회의

출범식 직후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인사말에 나선 임대기 위원장은 “오늘 모인 내·외부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니 앞으로 실효성 높은 자문과 정책 제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되도록 자주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언젠가 우리가 내놓은 안이 교정정책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활

동하겠다”며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뒤이어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및 교정 현황·정책 설명이 진행됐다. 위원들이 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교정이 맞닥뜨린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위원들은 교정조직,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현황, 특별사법검찰권 행사, 교정장비 개선 및 도입, 교정공무원 직무집행 강화, 사회복귀 맞춤형 정책,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교정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분야별로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갈무리했다. 각 위원 소개와 인사말, 교정본부 각 과의 제시 과제 소개 순서까지 거친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는 차후 활동 일정 조율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교정정책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인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Mini Interview

교정정책 발전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교정사에 모범이 되는 족적을 남기자’는 취지로 위원장 취임의 포부를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참여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교정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언과 자문을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임대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하나 되어 완성한 새로운 시작 거창구치소 개청식

우리나라 55번째 교정기관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 자치 처우 전담교정시설인 거창구치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2011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의로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거둔 귀중한 결실이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 끝에 완성한 새로운 시작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거창구치소의 출발 키워드, '상생'과 '모범'

지난 10월 18일, 거창구치소 개청식이 구치소 개방공원에서 거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박호서 대구지방교정청장, 최만립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

의장, 김성원 창원지방검찰청장, 이수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김병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거창군민 및 성산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개청식에 참석해 거창구치소의 출발을 응원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소재의 거창법조타운 한편에 자리한 거창구치소는 18만㎡ 부지 위에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저층 분산형 구조로 지어졌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로서 경범죄 수용자, 모범수 등을 대상으로 자치처우 수용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태양광·지열 시스템 구축, 지역 인재 채용, 관내 관광명소와 특산품 홍보, 테니스장·농구장·개방공원 등의 부대시설 개방, 직원 및 가족 전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창군 및 주민들과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거창구치소 개청 경과보고에 나선 김찬우 소장은 “올 1월부터 약 9개월간의 시범 운영 끝에 개청식을 거행하게 됐다”라며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거창구치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개청을 넘어 성공적인 미래로

관서기, 개청유공표창, 개청유공감사패를 차례로 수여한 후 한동훈 장관은 “거창 주민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라는 애정 어린 인사말로 기념사의 운을 뗐다. “2011년 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의로 시작된 거창구치소 건립사업은 2014년 주민들의 찬반



논의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9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 주민들은 결국 거창구치소 개청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라며, 거창 군민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모범을 몸소 선보인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거창 주민들께서 ‘거창구치소 개청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상생 운영에 힘쓰겠다”라는 진심 담긴 말을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축사에 나선 최만립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거창구치소 개청 과정은 우리나라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라며 “서부 경남 법조의 중심이 될 거창법조타운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구치소 개청이라는 용단을 내려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곳을 거친 교정공무원이 다시 거창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거창군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청식 직후에는 거창구치소 청사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시삽 및 기념석 제막식, 내빈 기념촬영, 시설 참관 등 개청을 기념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닮은 파란색 현판처럼 거창구치소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높고 푸른 교정교화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교정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단정한 정복을 입은 교정공무원들이 당찬 발걸음으로 정부과천청사에 모여들었다. 자주적인 교정행정의 시작을 기념하는 ‘교정의 날’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다.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대한민국 교정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교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교정의 참된 의미를 새겼다.

글 김태일 사진 신성욱



국민을 위해 충혼의 의지를 잊는 사람들

지난 10월 27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회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장 및 교정참여 인사를 비롯한 약 800명의 교정 관계자가 참석해 ‘교정의 날’을 기념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한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교정행정 홍보영상 상영,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혼탑 제막식에서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직하신 교정공직자 167분을 기린 것처럼 후배 공직자들도 선배들의 충혼 정신을 본받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에서는 안양교도소 김철환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 김문태 대전교도소장이 흥주군 훈장, 이명자(서울남부교도소)·구진섭(경북북부제3교도소)·권태만(홍성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 윤창식 학성직업훈련교도소장·정진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최재우 밀양구치소장이 균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0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함께 그려내는 아름다운 교정의 미래

교정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을 위한 축하 영상도 상영됐다. 국회 법사위원회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 교정기관의 교정관계자를 비롯해 방송인 등 유명 인사들까지 '교정의 날'을 기념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상영된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담은 교정홍보 영상은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일반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서 교정공무원 대표로 활약한 합창단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합창단은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와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불러 청중의 박수를 이끌었다. 이어서 샌드 아티스트 박은수 씨는 배경 음악에 맞춰 지나온 교정의 역사를 한 편의 이야기로 구성해 모래알로 그려냈다. 또한 공연이 절정에 다다르고 모래판 위의 모든 그림이 지워지자, 합창단이 다시 등장해 합동 무대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공연의 감동을 가슴에 가득 품은 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도관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수상자들은 단상 위에 올라 기념 촬영을 했고, 강당 밖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교정 마스코트인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교정공무원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었다. '교정의 날' 행사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참석자들의 웃고 있는 표정에서 엿볼 수 있었다.

예술과 함께하는 교정교화,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한편 교정의 날을 맞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가 열렸다. 1962년부터 시작된 교정작품 전시회는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을 통한 정서함양 및 기능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특히 올해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지방교정청이 주관하고 서울, 대구, 대전, 광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해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작품으로 다양성을 확대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된 전시회인 만큼 심사대상도 늘어나 총 578점의 출품작이 전문심사위원들의 치밀한 평가를 거쳤다. 지방청마다 공예와 문예 부문으로 나눠 총 8개의 최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전시관을 찾은 많은 관람객은 감상을 마친 후 전시관 한편에서 작품 구매를 상담하기도 했다. 본 전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교도작업 운영, 작업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등에 재투자해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된다.

서울지역 전시관 금나래아트홀에서 작품을 감상하던 서울동부구치소 강혜숙 교감은 "작품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품절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의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러한 활동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고 교정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 발전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교정작품전시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율과 책임, 감사와 존중의 아름다운 조화

천안개방교도소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낮은 담장, 너른 정원과 보랏빛 캐노피, 그 주변을 옹기종기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다소곳이 자리 잡은 천안개방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인 자율과 책임, 감사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제 곧 출소할 여성 모범수들이 사회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방형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1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믿음직한 징검다리

천안개방교도소는 40년 가까운 역사를 품고 있다. 1988년 11월 개청한 뒤 1994년 가석방 예정자 생활지도소, 2002년 과실범 전담교도소, 2009년 사회적응 훈련원으로 운영되다가 2022년 1월 여성개방교도소로 기능 전환됐다. 이로써 천안개방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주변에 없는 교정기관이자 여성개방교도소로서 남다른 상징성을 지니게 됐으며, 수용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성실하게 작업에 임하는 여성 모범수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중간처우 수용자들에게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에 따라 천안개방교도소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방형 처우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수용자들은 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자율 보행이 가능하며, 외부 통근 작업을 할 수 있고 일과 후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등 한결 자유로운 수용 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에는 엄정한 책임이 뒤따른다. 수용자 자치회는 법령과 교도소 규칙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익적 규율을 정해 생활하는데, 수용자가 규율을 어기면 자치회 임원들이 상별 의견서를 작성해 교정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 직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벌점을 부여하며, 규율을 세 번 이상 어긴 수용자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벌 후 원래 있던 교도소로 환소한다. 이처럼 자율과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수용 원칙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에, 수용자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안영삼 소장의 설명이다.



2

개청에 버금가는 대대적 변화

천안개방교도소는 2022년 1월부로 여자개방교도소로 기능 전환되면서 개청에 버금가는 변화를 실행에 옮겼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성 모범수의 사회 적응을 위한 중간처우 교정기관인 만큼 여성 친화적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이다. 수용자 거실에는 2층 침대와 화장대가 놓였고, 탕비실은 휴식을 취하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수용자 통행로 위에 설치된 캐노피 지붕을 보라색으로 칠해 여성 모범수를 뜻하는 연보라색 수용복과 색깔 맞춤을 했다. 수용자 다목적 시설인 소통관에는 교육실·도서관·휴게실·헬스장·샤워실 등 일과 이후와 주말에 사

용 가능한 시설을 채웠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천안시 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1,500여 권을 대여·비치하는 등 총 6,900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 도서관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우리 소는 2023년 5월부터 양육 유아 수용자들을 수용했습니다. 18개월 이하 양육 유아가 있는 수용자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키움동’을 마련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길 아래 영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개별 거실, 실내외 놀이터, 세탁실 등을 내실 있게 갖추고 외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수용자 및 양육 유아 심신 건강 유지와 교정행정 선진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

감사와 존중의 정신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다

교정공무원 인적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여성 교정공무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직원 식당 2층에 남성 교정공무원 상황대 기실을 신설했다. 아울러 헬스장과 샤워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직원 복지도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

“개방형 처우 시행에 따라 우리 직원들은 일반 교도소처럼 수용자들의 일과 전반을 관리하되, 규율에 맞게 행동할 경우 자율적으로 일·휴식·자기계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정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없이 직원들이 개입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징계와 환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수용자들 스스로 행동을 자기 검열하고 올바르게 생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천안개방교도소의 일과 전반에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면면히 녹아 있다. 수용자는 개방형 처우를 보장하는 교정공무원에게 늘 감사를 표한다. 한편 교정공무원은 모범적으로 막바지 수용 생활에 임하는 수용자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의 미래를 힘껏 응원한다.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천안개방교도소의 아름다운 문화와 분위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전망이다.



감시와 통제를 넘어 미래 설계의 동반자로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수용자 관리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이집 수용자 기본 교육, 개별 처우 계획 수립, 가석방 예비자 선정, 자치회 관리 감독 등은 물론 다양한 사회복귀 지원 교화 프로그램까지 두루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힐링과 내일의 희망을 접붙이다

대체로 여성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과와 함께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좋아한다. 이러한 점을 십분 반영해 수용자가 스스로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복귀 지원 교화 프로그램이 바로 ‘힐링타임’이다.

천안개방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거치는 힐링타임은 여성들의 성향에 맞춰 섬세한 모양새로 진행된다. 자신들의 미래 모습을 어느 정도 구상한 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날 먼저 편지지를 지급한다. 다음날 시작되는 힐링타임은 따

뜻한 차, 편안한 음악, 적당한 다과와 함께 출발한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20분가량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한층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돋는 선행 과정이다. 이후 자존감 회복과 긍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시청한 뒤, 전날 나눠 준 편지지에 출소 후 실천 가능한 계획과 목표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한다.

“보통 20분 정도 작성할 시간을 준 뒤, 적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수용자를 선정해 계획과 목표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이들의 발표를 들으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던 수용자들도 빠르게 진지한 태도로 돌아섭니다.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내 눈앞에서 미래를 발표하는 수용자는 가슴 벅찬 희망을 이야기 하니까요. 어느 정도 작성이 끝나면 편지지를 가져가 출소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출소 후 삶을 고심하고 그에 걸맞은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돋습니다. 보안과 직원들이 교정공무원을 넘어 수용자 미래 설계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귀중한 시간이죠.”

커지는 보람, 건강해지는 대한민국

보통 이 같은 사회복귀 지원 교화 프로그램은 사회복귀과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천안개방교도소는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존재하는 중간처우시설인 만큼 보안과도 적극적으로 교화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덕분에 수용자의 긍정적 변화상을 더욱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과 업무에 대한 보람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양육 유아시설인 ‘키움동’ 공간을 기획·구성하는 일도 보안과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보안이 중요했고, 이에 따라 외부에 공간 구성 업무를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외 선진 유치원 정보 검색 취합 및 천안 소재 어린이집을 견학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인 교정위원님의 자문을 듣는 등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우리만의 양육 유아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한 끝에 남부럽지 않은 양육 유아시설이 조성되어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개방형 처우를 받는 모범수가 생활하는 공간과 일반



수용자가 아이를 돌보는 수용동인 키움동을 모두 관할하다 보니 계호 부담이 상당하지만, 천안개방교도소 보안과는 조만간 인원을 충원한 뒤 완전 4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용자 관리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 월간 <교정>에서 전달할 선물로 고급 헤어드라이어를 신청하는 등 직원 복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천안개방교도소 보안과. 이들이 틱운 희망의 새싹은 출소자들과 함께 전국 각지로 퍼져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MINI INTERVIEW

변화에 앞장선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작년 1월 교도소가 여자개방교도소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거쳤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껏 기꺼이 변화에 앞장서 준 직원들 덕분에 오늘날 수용자 정원을 거의 가득 채우고도 한층 안정적인 개방형 처우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천안개방교도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보안과 우윤제 과장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누구나 수시로 하는 이 고민의 답은 명료하다. 말하면 된다.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왜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마음속 감사의 마음을 밖으로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유독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과 자주 부딪치는 시기가 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슬럼프’라 이름 짓고 부족한 자신을 탓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능력은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의 삶과 처한 상황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일상이 제멋대로 뒤엉켜 버리는 것이다.

혹자는 묻는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실이 변하느냐고. 바뀐다. 전 세계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주관적 안녕감·낙관성·희망·활력·친사회적 활동·자아존중감·사회적 지지·행복 등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에는 개개인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진행자 데보라 노빌은 저서 『감사의 힘』을 통해 힘주어 말한다. 삶을 살아가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감사’라고.

감사로 건강해지는 몸과 마음

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교 연구진은 2012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5월에는 성인남녀 186명의 건강·심리를 테스트한 결과, 감사하는 사람의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가량 낮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편, 잉글랜드 워릭대학교 알렉스 우드 교수 연구팀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분류된 실험자를 전원이 속면을 취하며, 우울증 중세를 보인 경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밝혔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쓴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탈 벤 샤히르는 “감사를 주고받으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양성순환이 짹트는데, 이는 행복감을 증가·연장시킨다”며,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하기 권한다.



고마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5가지 방법

지금까지 감사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다. 이제는 실전에 나설 차례. 그렇다고 갑자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자니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100% 전할 수 있는 ‘감사의 대화술’ 다섯 가지.

① ‘대화의 끝자락’이 절호의 기회

평소에는 아무 말 없다가 무턱대고 고맙다고 말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진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최적기는 대화의 말미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덧붙여 보자. 십중팔구 상대방 입에서 똑같은 말이 흘러나올 것이다.

② 적절하게 칭찬하라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손꼽히는 조 지라드는 책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에서 영국 속담 하나를 소개했다. ‘바보라도 칭찬해 주면 훌륭한 사람으로 변한다.’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기 힘들다면 대화 사이사이에 칭찬을 섞자. 감사를 전하면서도 나에 대한 상대방의 고마움을 솔직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③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라

이해인 수녀가 저서 『고운 마음 꽂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골라 사용해 보자. ‘때문에’ 대신에 ‘덕분에’를 입에 붙이고, ‘신경 끄세요’라고 말할 자리를 ‘마음 놓으세요’로 대신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노력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좋아하는 특정 표현을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④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라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고마움과 호감을 느낀다. 대화 주제를 상대에게 맞추고,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보자. 다양한 표정을 곁들이면 금상첨화. 단지 잘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⑤ 때로는 손 편지

정성 들여 꾹꾹 눌러쓴 손 편지는 여전히 감동을 선사하기에 제격이다. 책 『땡큐 레터』를 쓴 신유경 작가는 15개월 만에 365통의 편지를 직접 써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부쳤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해졌다는 게 그녀의 전언. 지금 당장 감사 편지를 써 보는 건 어떨까.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부산형무소와 근대 행형(하)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I. 부산형무소 연혁

II. 시설 현황

III. 직원

IV. 수용자

V. 처우

VI. 형무 작업 및 교육·교화

VII. 기타

IV. 수용자

1. 서

1926년 이후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1930년 수용 연인원은 252,507명,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690.43명이었다.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연인원	197,747	204,647	215,859	235,309	252,507
1일 평균 인원	541.77	560.67	589.59	644.68	690.43

2. 수형자(1931년 5월 30일 기준)

가. 죄명별

601명의 수형자 가운데 절도죄가 341명으로 약 57%를 차지했고 강도, 사기 및 공갈, 문서위조 등의 순이었다. 괈호는 여자를 나타내고, 각 죄의 5인 이하는 기타의 죄에 포함했다.

죄명	인원	비율
공무집행방해죄	6	0.99
방화죄	6	0.99
주거침입죄	6	0.99
문서위조죄	38	6.32
위증죄	6	0.99
외설간음 및 중훈죄	6	0.99
살인죄	5(1)	0.83(33.33)
상해죄	13	2.16
약취 및 유괴죄	7	1.16
절도죄	341(2)	56.90(66.67)
사기 및 공갈죄	45	7.49
강도죄	48	7.99
횡령죄	21	3.49

죄명	인원	비율
보안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죄	5	0.83
1930년 법률 제8호 절도죄	16	2.66
경찰범처벌령	7	1.16
기타의 죄	24	3.99
합계	601(3)	100.00(100.00)

나. 연령별

구분	18세 미만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합계
남	2	18	245	204	107	18	4	598
여			2		1			3

다. 형기별

수형자 형기별 내역은 무기형과 15년 이상의 수형자는 없었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수형자 7명이 수용돼 있었으며 구류형은 7명이었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무기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1년 미만	6월 미만	구류	합계
남			7	80	111	239	155	2	7	598
여						2	1			3

라. 입소 횟수

범수	초범	2범	3범	4범	5범	6범
인원	217	134	89	55	52	40
범수	7범	8범	9범	10범	11범	
인원	9	5	2		1	

마. 최근 5개년간의 신수형자 중 초범과 누범별

1926년부터 1930년까지 2,945명의 신수형자 중 초범은 1,941명으로 65.9%, 누범은 1,004명으로 34.1%를 차지했다. 누범자가 많아도 이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면 부산은 일본과 조선의 교통요지로 경성에 이은 대도시이자 상업이 번성하는 등의 이유로 인한, 즉 정주성(定住性)이 좋아 도시 집중의 폐해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합계
초범	344	318	409	428	442	1,941
누범	179	189	214	213	209	1,004
합계	523	507	623	641	651	2,945

3. 수용자 등

가. 입소자

구분		형사피고인		수형자		노역장유치		1일 평균 인원
1926년	남	763	730	523	513	97	88	3.8
	여		33		10		9	
1927년	남	733	707	507	503	116	114	3.7
	여		26		4		2	
1928년	남	819	793	623	612	78	74	4.2
	여		26		2		4	
1929년	남	965	921	641	633	119	107	4.7
	여		44		8		12	
1930년	남	949	932	651	644	156	138	4.8
	여		17		7		18	

나. 출소자

구분		형사피고인		수형자		노역장유치		1일 평균 인원
1926년	남	655	621	412	403	101	91	3.2
	여		34		9		10	
1927년	남	860	834	590	585	109	107	4.3
	여		26		5		2	
1928년	남	769	741	693	683	82	78	4.2
	여		28		10		4	
1929년	남	1,011	970	551	541	115	104	4.6
	여		41		10		11	
1930년	남	958	938	612	607	154	135	4.7
	여		20		5		19	

다. 판결확정자를 제외한 피고인 석방자

구분		형집행유예	공소	불기소	기타	합계
1926년	남	24	50	143	95	312
	여	4	1	8	10	23
1927년	남	26	55	288	76	245
	여	4	4	8	6	22
1928년	남	36	44	194	70	345
	여	2	3	6	4	15
1929년	남	33	93	234	110	470
	여	5	2	21	5	33
1930년	남	41	88	294	61	484
	여	2	2	7	1	12
1931년 5월 말	남	5	38	130	5	178
	여	1	-	6	1	8

※ 기타란은 보석, 예심면소, 구류만기, 구류취소 등임.

라. 형사피고인 체소(帶所) 기간

구분	1월 미만	2월 미만	3월 미만	4월 미만	5월 미만	6월 미만	7월 미만	8월 미만	9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합계
남	20	-	4	2	1	8	1	1	-	1	38	
여	2	-	-	-	1	-	-	-	-	-	3	
합계	22	-	4	2	2	8	1	1	-	1	41	

4. 출정 인원

구분	출정 일수	출정 인원	계호자	1일 평균		최다 인원
				출정 인원	계호자	
1928년	259	1,443	702	56	2.7	29
1929년	275	2,027	900	74	3.3	32
1930년	282	1,891	905	67	3.2	22

5. 가출옥 인원

1926년부터 1931년까지 가출옥 인원은 아래 표와 같으며 1931년은 아직 반년에도 이르지 않았는데 예년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종래에 반해 단기수형자로 이런 종류의 은전에 따른 바에 의한다. 아울러 형집행정지는 1926년 중 3명, 1927년 5명, 1928년 3명, 1929년 4명, 1930년 3명, 1931년 2명이었다.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인원	15	22	15	20	13	35

V. 처우

수형자가 항상 평온을 유지하고 또 점차 근면의 습관이 증진되는 것은 다행이었다. 그리고 상우의 방법으로 작업독려규정, 소년처우의 주의사항, 수형자의 조례(아침 세면 후 모두 동쪽 하늘을 향해 간수의 지휘 아래 황실을 받들어 감사하는 마음, 조상숭배, 사은보사(四恩報謝, 부모의 은혜, 국왕의 은혜, 중생의 은혜, 3보(부처, 부처의 가르침인 법, 승려)의 은혜)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시함, 그 성적은 양호함), 기타 교회시(敎誨時)의 시설 등은 다른 형무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

1. 수형자 동작 시간표

구분	기상	출방 조식	취업	오전 휴게	중식	오후 휴게	태업	석식	환방	취침	작업 시간
1월	07:10	07:10 07:50	07:50		12:00~ 12:30		16:20	16:30	16:40	20:00	8시간
2월	06:50	06:50 07:30	07:30		"		17:00	17:10	17:20	"	9시간
3월	06:30	06:30 07:10	07:10		"		17:40	17:50	18:00	"	10시간
4월	06:00	06:00 06:40	06:40		"		18:10	18:10	18:00	21:00	11시간
5월	05:00	05:30 06:10	06:10	10:00~ 10:15	"	15:00~ 15:15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	"	"		"		"	"	"	"	"
9월	06:00	06:00 06:40	06:40		"		17:40	17:50	18:00	20:00	10시간
10월	06:10	06:10 06:50	06:50		"		17:10	17:30	17:40	"	"
11월	06:50	06:50 07:30	07:30		"		17:00	17:10	17:20	"	9시간
12월	07:10	07:10 07:50	07:50		"		16:20	16:30	16:40	"	8시간

※ 취사부의 기상은 기상 전 2시간 이내로 한다.

2. 식사

주식물은 수수 4분(分), 밤 3분(分), 대두 3분(分)의 혼합취사이고, 부식물은 아침은 된장국을 주로 하고 낮에는 절인 채소류를 주로 해 채소 및 해조류에 천연 양념을 더해 조려서 주었다. 또한 10일에 2회 이상 생선, 고기 또는 다른 육류를 공급하는 것을 예로 하고 기타 법규정상의 상우자(賞遇者)는 물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각 규정에 근거해 가끔 특별메뉴에 따라 다른 채소를 공급했다.

1일 1인 평균 식비는 8전(錢) 내외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9.47전에 비해 1전 넘게 줄어든 것인데 전년보다 각 곡물 및 야채의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그 밖에 영양 가치를 계산함에 평균식은 2,800칼로리 이상으로 보건상 조금도 지장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으나 당시 일반피수용자의 영양상태는 좋았다.

3. 형무소 비용과 재소자 연간 1인 비용액

1928년부터 1930년까지 3년간 1인 1개년의 비용 평균은 265원 92전으로 이를 재소자 1년 연인원으로 하면, 즉 1일 1인당 제 경비는 72전 9리가 된다.

구분	1928년	1929년	1930년	
	재소자 1일 평균 인원	601	667	688
형무소 비용	감독비	102,094.300	106,961.870	103,020.620
	식료비	21,710.970	23,788.920	19,237.010
	의복비	1,151.920	1,121.000	1,561.190
	기타 제비용	45,428.040	45,725.710	46,792.370
	합계	170,395.230	177,597.500	170,611.190
재소자 1인당 비용	감독비	169.874	160.363	149.739
	식료비	36.141	35.667	27.960
	의복비	1.917	1.681	2.269
	기타 제비용	75.587	68.554	68.012
	합계	283.520	266.263	247.981

※ 임시부 제외

4. 행장 심사

행장이 양 이하로 개전의 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심사 수가 많음은 누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정		심사의 종류				합계	전심사에 대한 각 비율(%)
행장	개전의 정	보통	3분의 1	임시	석방		
선량	현저	38	2	5	18	63	4.4
양	있음	93	6		150	249	17.6
보통	있음	49	1		84	134	9.5
양	어려움	77	6		45	128	9.0
보통	어려움	439	68		255	762	53.8
불량	어려움	58	5		18	81	5.7
합계		754	88	5	570	1,417	

5. 연도별 상표(賞票) 부여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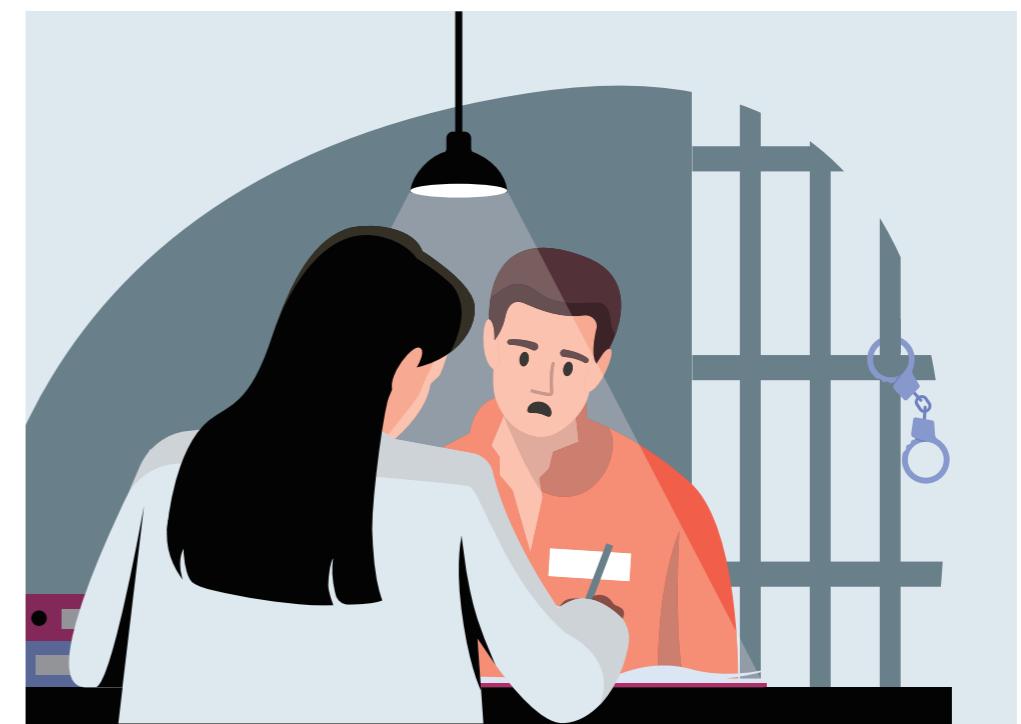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5월 말
상표 1개	18	18	11	16	18	
상표 2개	2	1	1	3		8
상표 3개						1

6. 연도별 징벌 인원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5월 말
징벌 인원	168	139	104	113	81	25
병과벌 인원	27	28	34	30	6	

7. 연도별 환자 인원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환자 수	221	245	250	293	278
사망자 수	4	10	14	15	9



VI. 형무 작업 및 교육·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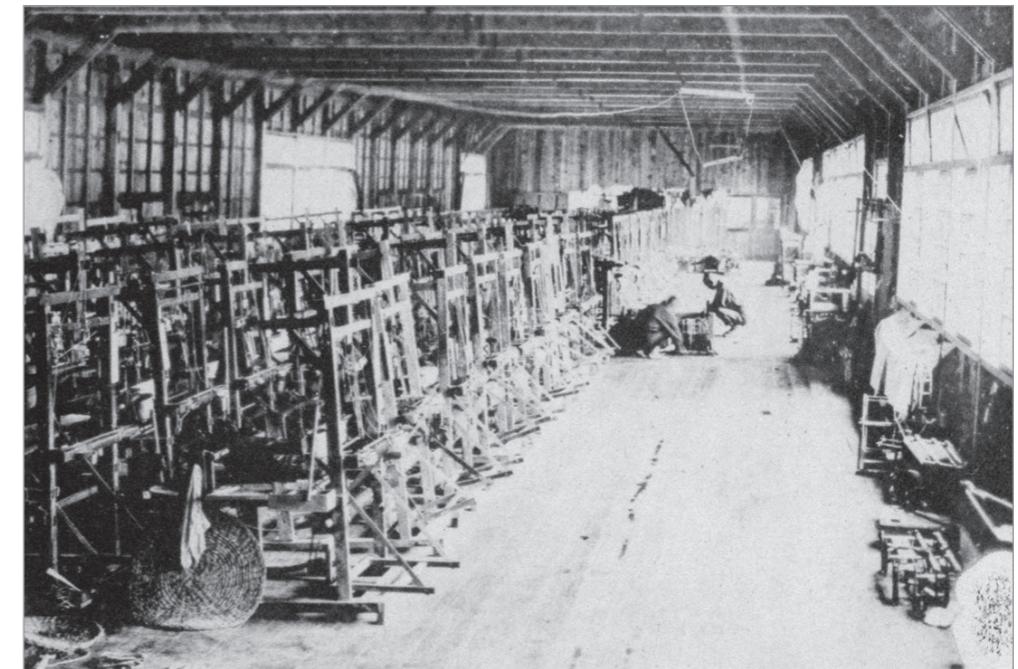
1. 형무 작업

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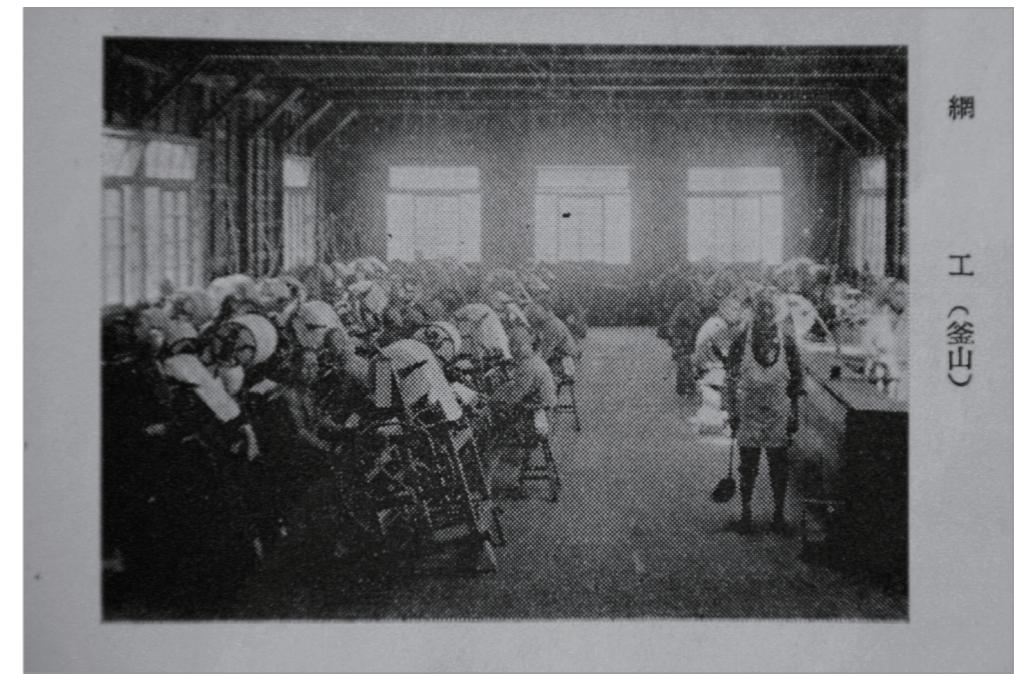
작업은 30개 업종에 592명이 취업했다. 관사업(官司業)에 있어 197명 중 벽돌공 73명을 최다로 하고, 다음으로 직물공 21명, 청소부 16명(감방, 공장, 기타), 보칠부(補綴夫) 14명, 영선부 10명, 양재봉공(洋裁縫工) 9명, 세탁부 8명, 기타 혁공, 죽세공, 타올, 부포(敷布), 도기공(陶器工), 무력(鐵力, 철강을 주석으로 표면 처리한 강판, 깡통 등 항상 수분과 접촉하는 부재에 이용되는 외에 예전부터 완구의 주요한 재료), 영선부 등 계 41명에게 작업을 부과했다. 관사업 중 양복, 구두, 지물, 벽돌에 전적으로 집중해 다행히 지역 사정도 좋고 각 업종도 수요자가 많아서, 특히 양복공은 주문이 쇄도해 성황을 이뤘고, 때때로 작업시간을 야간으로 연장해 제작하기도 했다.

수부업(受負業)은 326명 중, 기계직강공이 146명으로 최다이고, 이어서 쿠루메 가스리공(久留米絹工, 큐슈 쿠루메 지방에서 나는 튼튼한 무명이며 감색 바탕에 흰 점박이 무늬가 있음) 86명, 수망공(手綱工, 손에 들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73명, 지물 18명, 혁공 3명이다.

위탁업에는 69명 중 종려공(棕櫚工,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제품) 43명을 최다로 하고, 이어서 행낭공(行囊工,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넣어서 보내는 주머니) 7명, 지물공 5명, 양재봉공 4명, 기타 죽공(竹工), 경사공(經師工, 경문을 쓰거나 쓴 것을 표구하는 사람), 이발, 혁공, 인부 등 10명이 사역했다.



부산형무소 공장, 조선형무소 사진첩



망공, 조선의 행형제도

나. 형무소 수입액 및 이익금과 1일 1인에 대한 비율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관사(官司)업, 위탁업, 수부(受負)업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1928년도의 수입금이 적은 것에 반해 이익금은 1929년, 1930년 두 해에 비해 그 액이 많은 것은 1929년, 1930년도 모두 점차 공임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1929년도의 관사업 수입액은 1930년도의 수입에 비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이익금이 1930년도는 1929년보다 그 금액의 많은 것은 제작기능의 향상에 1인 독려를 가한 결과 비교적 정교품을 제작한 것에 따라 좋은 평가를 고려한 것이다. 1929년도의 위탁업 이익금은 1930년도에 비해 많고, 1인당 그 액이 적은 이유는 1930년 종연공장(방직공장) 신설에 따른다.

구분	1928년			1929년			1930년		
	수입액	이익금	1인당	수입액	이익금	1인당	수입액	이익금	1인당
관사업	26,078,630	6,860,371	0.136	37,220,930	10,453,845	0.156	35,831,990	11,276,894	0.172
위탁업	4,973,150	1,747,296	0.177	7,597,740	1,476,648	0.094	482,290	1,388,104	0.103
수부업	25,245,840	10,557,337	0.103	16,655,770	6,961,265	0.075	19,672,680	6,261,687	0.056
합계	56,297,620	19,165,004	-	61,474,440	18,891,758		60,315,960	18,926,685	

다. 작업상여금 계산고

작업상여금 계산은 취업 일수에 따라 산출한 액수이다.

구분	1928년	1929년	1930년
1인당 평균액	11,880	10,332	10,758

라. 형무소 수입 1인당 1일 평균액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취업 연인원	149,580.0	151,036.5	162,520.1	175,482.5	191,351.7
작업수입금	42,049,410	59,221,270	56,297,620	61,474,440	60,315,960
1인당 1일 평균액	0.281	0.392	0.346	0.350	0.315

마. 농작품 수확고(1930년)

농작물을 심은 연평수 3,594.8평에 대한 수확고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야채류	기타	합계
전년도 초과분			
본년도 수입분	543.750		543.750
소계	543.750		543.750
형무소 사용분	490.350		490.350
타 매각분	8.400		8.400
기타			
소계	498.750		498.750
잔고	45.00		45.00

바. 1930년도 석방 시에 급여한 작업상여금

구분	인원	금액	좌동 최다액	좌동 최소액
1원 미만	46	16.41	0.94	0.01
5원 미만	192	578.87	4.99	1.03
10원 미만	158	1,086.94	9.87	5.03
20원 미만	76	1,034.44	19.72	10.08
30원 미만	29	919.19	29.58	20.23
50원 미만	14	541.66	49.26	31.02
100원 미만	10	664.63	93.58	51.10
100원 이상	2	391.10	207.48	183.62
합계	527	5,033.24	이상 급여 1인 평균 9.55	

사. 특별작업

부산은 사계절 항상 바람이 강하고, 특히 소재지인 대신정(大新町)은 구덕산의 고개를 넘어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 흔히 대신남(大新嵐, 거칠고 세차게 부는 바람. 비, 눈, 번개를 동반한 경우도 있었다)이라고까지 부르기 때문에 모래 먼지가 훌날리고, 부산형무소 구내 노면은 크고 작은 돌멩이가 섞인 거친 흙 때문에 그 피해가 심했다. 또 비가 올 때는 진흙탕이 돼 보행에 고생하는 속사정이 있었다. 일찍부터 지반정리의 필요성을 통감해 여기저기 깊이 조사한 결과, 그 지형 일체를 보니 구내 주변의 조금 높은 곳에서 항상 물이 흐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예전에는 큰 강이 있었다고 생각돼 구내의 한쪽을 시굴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으나 크고 작은 돌이 엄청났다.

부산형무소는 그 위치나 지반 높이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듯이 옛날에는 큰 강의 밑부분으로 증명돼 새삼스럽게 그 변화의 커다란 흔적에 깜짝 놀랐다. 이에 구내 지반의 근본적인 대정리의 단행을 기획하고, 먼저 구내 예상 개소의 자갈 채굴에 착수해 사용이 가능한 돌을 3단으로 선별하고, 잔돌의 양이 엄청나 백여평(선별 외의 큰돌은 신설 우물둘레에 사용하고 남은 다량(多量)은 장래 사용할 영선용으로서 한쪽 구석에 쌓아 둠)으로 해, 큰 것은 구내 차도에 깔고 작은 것은 빈 땅 한쪽에 뿐려 1931년 5월 말 구내 전부의 지반정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구내는 지난번의 우천 시 진흙탕 모습이 자연히 사라져 깨끗해지고, 강풍에 수반하는 모래 먼지도 그 자취를 감춥과 동시에 규율, 위생, 풍경 등 혁신의 느낌이 들었다.

2. 교회

가. 서

총집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제(敎題)를 게시하고 가끔이지만 서화 또는 분재류를 전열했으며 또 사대절(四大節, 전에 국경일로 삼았던 四方拜, 紀元節, 天長節, 明治節의 총칭) 당일에는 전 직원이 나열해 레코드로 국가를 연주해 그 기념일을 엄숙하게 해 봉축의 의의를 더했다. 또 경우에 따라 시간을 달리해 감화교육을 위해 한두 번 레코드를 연주하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지 않도록 한층 더 청각과 시각의 양면으로 구체적으로 이를 주입해 교회에 대해 느낀 감정을 깊게 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항상 역사, 공예, 종교 및 군사교육, 풍경 등의 그림엽서를 각각 염선한 후, 교회 후에는 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이를 계속 열람(그림엽서 6장을 유리 뚜껑 면에 배열해 그 3면을 게시판 형태로 장치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서화, 분재, 그림엽서류의 전람은 정서교육 및 상식 향상을 환기해야 할 취미의 향상에도 가치가 있고, 특히 레코드처럼 악기는 정신의 정화통일을 도모해 감정을 완화하고 종일 침묵 생활을 하는 수형자의 기분을 신장하는 자동적 감화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좁고 좁은 곳에서 부자연적 생활을 계속해 침체된 그들의 정신을 위안하고 혹은 혼탁한 잡념이나 몰래 품는 불만을 서화나 그림엽서처럼 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움과 분재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해 이를 진정시켜 심기일전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한 동시에 규율적 작업에 피곤해 활기가 없는 정신에도 자연의 미를 접하게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심신의 위안을 주고 나아가서는 사자(四者) 모두에게 그 사상을 고상(高尚)하게 하며 차분한 감화를 도와주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이를 실제 시도해 본 결과 현장 등에서 그들의 긴장감을 증가시켜 교화상 도움을 준다고 판단됐다.



교육

나. 총집교회

구분		1929년	1930년	1931년(1~5월)	합계
일요교회	횟수	31	23	10	64
	인원	11,199	12,490	5,311	29,000
경축일	횟수	10	8	7	25
	인원	4,725	4,419	3,767	12,911
임종교회	횟수	8	4		12
	인원	55	28		83
공장교회	횟수	63	1		64
	인원	4,846	80		4,926
합계	횟수	112	36	17	165
	인원	20,825	17,017	9,078	46,920

다. 개인교회

개인교회는 정기교회 16종이 시행됐으며, 1930년 정기교회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이유는 5법 이상의 자에게 어떤 사항에 관해 특별조사를 했기 때문에 의한다. 통신교회란 석방후 서면으로 교회를 하는 것이고, 이감교회란 이감 전출 시 실시하는 교회이다.

구분	1929년	1930년	1931년(1~5월)	합계
정기교회	2,325	174	225	2,724
신입교회	425	633	288	1,346
접견교회	80	673	252	1,006
편지교회	90	24	1	115
징벌교회	163	72	20	255
해벌(解罰)교회	93			93
임방(臨房)교회	257	286	28	571
병자교회	281	280	82	643
조상(遭喪)교회	10	4	3	17
기일교회	105	77	4	186
청원교회	270	240	103	613

구분	1929년	1930년	1931년(1~5월)	합계
수상교회 (가석방자 포함)	38	30	43	111
통신교회	375	211	38	624
석방준비교회	381	421	175	981
만기교회	380	470	212	1,062
이감교회	108	93	13	214
합계	5,381	3,688	1,492	10,561

3. 편지 및 접견

가. 편지

구분	종류	발신	수신	총계	취급 1일 평균
1929년	피고인	5,358	3,764	9,122	24.99
	수형자	1,999	4,221	6,220	17.04
	계	7,357	7,985	15,342	42.03
1930년	피고인	2,842	2,252	5,094	13.95
	수형자	3,842	3,052	6,894	18.88
	계	6,684	5,304	11,988	32.83

나. 접견

1929년 중 1일 평균 취급 수는 14.9명, 1930년 중 1일 평균 취급 수는 11.1명이었다.

구분	수형자			피고인			합계		
	허가	불허	소계	허가	불허	소계	허가	불허	소계
1929년	546	4	550	4,783	33	4,816	5,329	37	5,366
1930년	743	3	746	3,294	12	3,306	4,037	15	4,052

VII. 기타

1. 형무 훈련 10항

아래 형무 훈련 10항은 1929년 8월 1일 당시 부산형무소 소장이었던 不動藤太郎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① 형무 관리는 항상 자기의 대상인 재소자 교화의 소임을 생각해 그 직무의 중대함을 깨닫고 자기 인격의 수양에 노력하며 책임감이 절실하다.

② 계호경계는 형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임무는 시종일관 지성으로 번뜩이는 안목과 부단한 정신으로 추호도 편승할 기회를 주지 말고, 기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몸소 실천해 빈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③ 형무 관계 제법규의 연구는 물론 항상 담당 재소자의 신분장 활용과 기타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성격, 개성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행형 운영의 중심축인 규율의 엄수와 직업 훈련을 실시해 작업시설과 그 격려에 의의를 두고 인류 당연의 노동의 습관을 배양함과 아울러 규율의 본질을 깨달아 오만불손하고 안일하며 불규칙한 폐단을 교정해 언제나 땀 흘려 단련한다. 이로써 행동력을 높여 이른바 일하면 먹을 능력은 생기고, 밭 갈면 음식은 그 안에 있으며, 근무는 봉급 속에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해 실질적으로 굳건한 습관을 배양하는 데 노력한다.

⑤ 시험 삼아 형무소는 일종의 병원이고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할 때 직원 일체는 의사, 교회사, 교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교회교육은 반드시 교무계의 독점으로 해 이의 원조에 뜻을 두고 의료, 위생 역시 의무와 협력해 보건에 유의해야 한다. 원래 행형교육은 사회 실생활에 순응하기 어려운 보통의 지식, 기능을 전수받아 국민으로서의 도덕성의 함양과 이성의

계발을 목적으로 인격의 향상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도의적 훈육에 힘을 쏟아 교회와 같이 개별교회를 존중해 장점을 장려하고 악습의 교정에 힘쓰도록 한다. 이것 등의 중요한 임무는 항상 감방, 공장 등 적어도 그들이 접촉하는 자를 곳곳에서 개인적 교회, 교육, 의료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비독점에 있다. 이리하여 계호처우 모두 관대함과 엄함이 필요하고 변화에 덕으로 대우해 인도(人道)와 공평(公平), 온정(溫情)으로 이끌고 또 지나치거나 빼짐없이 법의 존엄과 철저한 법치 국민의 관념을 배양해 행형처우의 중요한 점을 실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수형자의 행장 시찰은 행형 최대의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그 정밀조사를 태만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의 심사 결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⑦ 직원은 한 가족이라는 감정과 의지로 항상 화친, 협력, 질서, 복종을 염두에 두고 또 이로써 공규정을 바로잡는 데 뜻을 두어 직무적인 의견 개진에 인색하지 않도록 허심탄회하고 당당한 길로 나아가 집단정신을 정화해 이로써 그 사명을 공고히 하도록 한다.

⑧ 형무의 내외(內外)는 항상 청결 정돈에 힘쓰고 특히 모든 사물에 대한 경제적 도덕 관념에 기초해 취급하거나 친절 공손을 취지로 또다시 폐물(廢物)의 이용에 힘쓰는 등 실제로 이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자제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그 어지럽고 혼탁한 두뇌의 도야(陶冶)를 꾀한다.

⑨ 행형사무는 복잡다단해 항상 서로의 의사소통을 피하고 통일적인 연락을 유지해 사무의 간명하고 정확을 기해야 한다.

⑩ 외래인에 대한 친절하고 정중함으로 적어도 불쾌감을 주는 것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

2. 부산형무소를 견학하고(부산형무소 참관기)

1931년 5월 22일 도청으로부터 공문에 따라 동래군, 경상남도 선찰 대본산 범어사 승려 단 문학사(文學士) 相馬勝英(소마 쇼에이) 씨 외 21명의 참관이 있었다. 참관 후 소마 씨 가 보낸 소감문이다.

감옥을 형무소라는 말로 대신했을 때 우리들의 형무소에 대한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역시나 감옥의 문 앞에 섰을 때는 학교를 참관하는 것 같은 희망이나 기쁨은 아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와 같은 호기심과 공포심에 휩싸였다.

사무실이 바쁜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과는 관계없이 소장실로 안내됐다. 의외로 좁고 불편함에 놀랐다. 거기에서 실내 가득히 공작품이나 미술품의 진열장을 봤을 때, 마침 초등학교 교원실에서 볼 수 있는 아동의 작품 진열대 같은 생각이 들어 자연히 우리들의 긴장된 기분이 훌가분해졌다. 소장으로부터 정중한 인사,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로서 건물이 불완전하다는 것 등 수형자의 의식주에서 위생, 거기에 일상생활, 수형자들에 대한 일체의 조사표까지 설명해 주었다. 이제 이곳 형무소의 일상생활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능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형무소에 대한 개념이 어렵잖이 떠올랐다.

이어서 실지 견학으로서 안내받았다. 먼저 조용하던 공간에 노크 소리가 울려 퍼지면 무섭고 엄중한 문이 열리고, 우리는 묵묵히 가지런히 정리된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쪽 문이 닫히면 우리는 소위 그들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세계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서 그 안에 커다란 사동이 늘어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는 자 외에는 사람의 그림자는 없다. 작은 주춧돌이 놓인 곳을 밟으며 병동으로 안내받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밝은 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몇 개의 거실 안을 엿보았더니 5, 6명이 누워있었다. 모두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 옆이 의무실로 형무소의 의무실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다.

그곳을 나와서 공장으로 향했다. 리어카를 운전하며 주어진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베를 짜는 사람, 양복을 만드는 사람, 또 지물(指物)을 만드는 사람, 매우 바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씩씩하게 일하고 있다. 인상을 보았다. 보아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 각각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제2공장으로 안내받았다. 이곳도 분주하고 게다가 속도감 있는 느낌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었다. 열심이다. 모두 우리들의 견학을 돌아보지 않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과연 위

를 올려다보자 멋진 작품을 출품했었기 때문에 상장이 많이 걸려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외부로 출장해서 일하고 있는 자도 있지만,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두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다. 즐거움도 있고 희망도 있는 것처럼도 느껴졌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생각해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비록 어느 정도나마 과거의 죄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해석에 따라서는 정숙하게 침묵 속에 일하고 있는 편이 고통을 참는데 다행스러울지도 모른다. 게다가 입소 전의 무직자가 새로운 일이 주어져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는 직업지도 및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사회에 다시 나가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각각 자기의 취미나 적성에 따라 일이 주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됐다. 물론 설비의 완전은 점점 그 방향으로, 그 요구대로 진전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모든 직업을 채택해 그 적성에 맞게 지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 일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공장에서 감방으로 이동했다. 혼거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했지만, 거실에는 각각 깨끗하게 의복이 정리돼 있었고, 청소도 잘 돼 있었다. 혼거함에 따른 불결함을 가능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각각 거실의 입구는 엄중하다. 착 들러붙어 있는 금속도구를 보면 마치 냉장고처럼 느껴졌다. 모두 하얀색으로 둘러싸여 밝은 광선이 가득 들어왔다. 누구든지 실내의 색에 따라 심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하얀색에 작용 받아서, 어떤 자는 그에 따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반성할 것이다.

취사장을 보았다. 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맛있는 냄새가 우리들의 식욕을 자극한 것을 말하고 싶다. 대두(大豆) 중심의 도시락과 야채의 부산물을 잔뜩 쌓아, 많이 늘어놓아 있었다. 이전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허락되는 범위에서 음식물은 영양 가치가 있는 것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나 일반사회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해 먹을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동시에 날마다의 생활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칼로리를 표준으로 여러 가지 것을 혼합해 영양 가치에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급여하고 있다. 분명히 영양 가치가 있는 것을 섭취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틀림없이 백미를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단지 습관에 의해서일지도 모르지만, 백미로 성장한 자만이 백미를 사랑한다. 이것도 요컨데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대두 등을 일상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만일 검소한 식사로 성장한 자였다면 오히려 기뻐할 것이 분명하다. 아니 일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맛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내받으면, 우선 이 내부의 생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는 형무소를 방문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엄중한 작은 통로를 딱 1번 통과했다. 그때 그들의 세계에 어떤 특종의 느낌을 느꼈다. 어쩌면 아마도 커다란 문이 열려 안으로 자동차라도 들어갈 것 같은 것을 상상해 본다면 틀림없이 큰 공장 정도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가능한 만큼의 넓은 범위의 물건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어느 것이나 아름답다. 그 가운데에는 훌륭한 예술품마저 발견할 수 있었다. 기뻤다. 우리들이 본 그들의 몇 사람인가가 이 아름다움을 표현했을 때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비록 어느 정도라도 부드러워졌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 필경 이 아름다움에 그는 모든 열정을 바쳤을 것이다. 우리들조차 그 작품에는 매혹됐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견학이 끝났다. 설명과 현장을 다시 돌이켜보았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할 가장 곤란한 교화사업의 하나로 형무소의 기본 체면을 세워 다시 선량한 사회인으로 교화해서 세상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에 아마도 열심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는 우리들의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였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인격적으로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한층 더 모든 방면에서 연구된 시설 및 교양에 의해 교화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형무소는 그 자체로 특별한 종류의 교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에 따라 실로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연구돼 점차 발달한 교육 방법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교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깊이 주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형무소의 시설이 이 목적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결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동반해 우리 또한 헛되이 형무소의 교화만에 일임할 것은 아니다. 서로 도와주거나 연구해 그들의 교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화됐던 자도 사회에 나가서 다시 범죄인이 되는 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는 각종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또한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 만일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출소하는 그들의 심경을 살피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고려해야 할 많은 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도 사회인으로서 출소자에 대해서 적어도 형무소와 같은 정도의 동정과 지

도를 가질 의무가 있다. 또한 형무소로서는 가능한 한 그들과 접촉해서 그들의 후회를 들어주는 사람이 돼, 위안자가 돼 양심의 죄를 털우게 하고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충분한 견학이나 조사를 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겉보기로부터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의 단체생활에 대한 훈련 및 설비는 눈에 잘 띄었지만 이 개인적 교화 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충분히 견학할 수 없었다. 또 이것은 견학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수형자들과 상시 접촉하는 자에게만 알려져야 할 특이성의 것이다. 인격의 접촉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만큼 형무소장을 비롯해 직원의 책임이 큰 것을 느꼈다.



3. 천장절 식후(式後)의 감상록

415호 今原常郎(가명)

시간은 흘러, 세상은 변하고, 어제는 소 내에서 여덟 번째 천장절을 맞이했다. 감개무량한 것이 있다. 점점 더 발전해 가는 우리는 죽(竹)의 원생(園生). 이는 우리 제국민(帝國民)의 크나큰 기쁨이다. 당일 교회당은 적백(赤白)의 휘장으로 사방을 장식하고 중앙에 한 단 더 높게 “근봉축천장절(謹奉祝天長節)”의 글씨가 선명하게 걸려 있고, 좌우로 대나무, 학, 사해춘풍(四海春風)의 오뚝이 족자도 한층 더 오늘의 기쁨을 축하하는 것처럼 왼쪽 입구에 걸려진 채 아침 햇빛이 밝게 파도치는 액자, 전방 단상 좌우는 식나무(青木), 난(蘭), 만년청(萬年青), 선인장 등의 분재식물에 의해 장식되고, 후방에 세워진 각지 명소 고적(古蹟)의 그림엽서를 사이에 두고 그림엽서대(臺)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저절로 당당하게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다. 재소자 입장 착석, 직원 입장, 잠시 후 소장님의 입장식이 시작됐다. 축음기에 따라 국가를 연주하고 마지막에 멀리 동방황거(東方皇居, 일왕이 있는 쪽을 향해 예절을 갖추는 것)를 향해 경례하고 폐하의 만세와 국토의 무궁을 기원하며 엄숙한 천장절의식은 종료됐다. 황실을 받들고, 부모, 형제에 대해 열성적인 소장님의 훈시가 있었다. 재소자에게는 깊은 반성과 자각을 부여하고 간생으로 개과천선의 길을 인도하게 됐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도 소장님의 말씀한 부모의 이야기에 미치자 3두(斗)의 뜨거운 철(鐵)을 삼키는 기분,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훈시 후 축음기를 통해서 동요, 군대 생활, 찬불가 등을 들었다. 어릴 적을 생각하자 돌아가신 부모가 생각나고, 찬불가에 의해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회상했다. 이리하여 식은 끝났다. 자신은 그때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행사가 많이 있기를 바랐다. 재소자 각자가 당일을 돌이켜보았을 때 누군가 자신을 되돌아보아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보냐. 개과천선에 뜻을 두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형무소란 죄인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일부의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자신은 자기 일개 한 사람을 주체로 해서 생각해보건대 입소 전의 자신, 그때는 공허와 허영으로 가득 차 무가치한 인간이었다. 하루아침에 입소의 몸이 돼 남들만큼 약했던 의지가 강해지고 허영이 내실이 돼 인내의 덕을 알고 직업의 귀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늘 잔여기 1년 4개월여를 남기고 출소의 광명을 보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여러 직원분의 동정과 여러 해에 걸쳐 사사기, 류스이, 후지모토, 아사이 각 교회사의 좋은 가르침과 한 분의 아버지, 한 분의 누이의 끝없는 사랑과 격려에 의한 결과라고 항상 자신은 생각하고 있다. 입소

생활에서 얻은 느낌은 평생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줄거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의 입소 생활에 의해 조금이나마 정신적으로 자각한 것을 기뻐한다. 가난에 처해서는 가난을 즐기고,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를 즐기며, 죽음에 처해서는 처연히 천국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신념과 심경을 배양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간생으로, 개과천선으로, 새로운 생명을 개척하는 것은 커다란 노력이다. 노력에 의해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전화 위복이 된다. 복이 돼야 한다.

- ① 10세를 넘긴다 해도 무언하리, 마음의 구슬을 스스로 닦지 않는구나.
- ② 너를 위해 조국을 위해 죽을 줄 알아야 내 소망이거니와 죄 많은 몸은,
- ③ 세상의 파도는 무언가 높아도 높지 않고, 참된 길을 마음 먹고 간다.

※ 천장절(天長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일)



<참고 문헌>

-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 100년사, 2021년 10월 28일.
- 부산형무소, 부산형무소 개황, 1931년 6월 30일(일본교정협회 도서관 소장).
- 조선치형협회, 조선형무소 사진첩, 1924년 8월 15일.
- 조선치형협회, 조선의 행형제도, 1938년 2월 20일.
- 형무협회, 조선형무소 연혁사, 일자 미상(일본교정협회 도서관 소장).

교도관의 교정·교화 개념 인식 분석(상)



윤답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교감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V. 결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교도관들의 교정(矯正)·교화(教化) 개념의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교도관으로, 30년간의 근무 경험을 통해 교도관의 교정에서 교화로의 인식 변화가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재범예방과 억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본 연구에 제기했다. 연구는 O와 C 교도소에서 경험 있는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심층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진행한 후,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矯導官)들은 대체로 교화(教化)와 교화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 변화단계의 합의로 분류한다.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의 다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와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다. 교화교육 전반에 걸쳐 교도관들의 교화에 대한 인식은 교화 교육에 관한 영역인 델파이 상위범주에서 교화인지 시기가 입사 전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화교육의 효과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교도관들은 교화로의 중추적 역할로 수용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도관 스스로 자기성취감, 보람의식의 강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教化教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도관의 교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교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신념(信念)의 전환을 초래하여 수용자의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교화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연계가 절실하다.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법률적·심리적 평가를 강화하여 수용자의 적극적인 치료참여와 치료효과를 향상하여 출소 후 재범예방과 억제를 높일 수 있다.

※ 주제어: 교정, 교화, 교도관, 수용자, 교도소 특성, 인식변화

※ 본 논문은 호서대학교 2022학년도 전기 박사학위 요약 정리한 논문임.

I. 서론

오늘날까지 교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한민국 행정의 역사적 사조를 조명하고 우리 교정행정의 역사적 인식 차원에서 교정을 바라보았다(남상철, 1998). 이는 교정(矯正)과 교화(教化)가 구분 없이 혼용(混用)된 교정이었다. 전 근대적 형집행기관인 교정시설에 구속되어 소년·성인 수용자를 타율적이고 획일적 집단으로 인식해 교정교육(矯正敎育)이 이루어졌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 더 발전적으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도관들의 강제성을 수반한 타율적이고 외형적교육(外形的敎育)의 시행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정은 해방 77주년의 세월을 겪어 오면서 교도관들 교육이 교정(矯正)과 교화(教化)로 인식되었다(김성화, 2006).

시대적으로 보면 교정(矯正)과 교화(教化)의 역사 분리 개념은 없었다(이영근, 2017). 이는 교도관 입문시 수용자 교화의 인지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적 교화교육이 행정 편의주의적 과중한 근무로 불가능함을 느끼고 있다. 교도관들 본연의 업무로서 교정(矯正)은 수용자를 ‘바르게 고친다’는 것이고, 교화(教化)는 ‘스스로 될 수 있는 자신의 내면과 신념의 변화’로서 출소 후 재범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도관들이 교화(教化)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용자가 교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 교도관의 긍정적 신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정(矯正)이 국가적 비전에 의존한 내재적·타율적 교육과 외형적 변화를 요구하고 사회적응 훈련인 행동주의적 도식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교화(教化)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본주의적 비전을 추구하고 수용자 자신의 심리적 변화가 사회 안전망으로 생활이 변화되고 자발적인 신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화는 현시대의 변천을 통해 수용자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신념, 사회적 공감과 신념 변화로 재범 방지가 기대된다.

현행 교정교육의 이론적 배경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로, 그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교정교육(矯正敎育)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도관의 의지와 교화의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3수준 6단계를 기준으로 교정교육과 교화교육을 심화 분석하였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05).

본 연구는 소년·성인 수용자와 교도관의 현장과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입소 당시 수용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인습화 이전 수준의 자기중심적이며 타율적인 단계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고 그 원인은 사건 전후로 진행된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과정, 형이 확정되는 기간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간의 현장 중심의 상

황과 현상들을 경험 관찰지로 기술하고 분석한 중재적 조건으로, 인본주의 관점의 교화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교도관의 인식으로 접근하였다.

교정당국에서는 수용자 관리 위주로 해방 이후 77년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수용된 기간 수형자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출소하여 사회에 진출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왔다(이언담, 2015). 그러나 이런 교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용되는 재범률이 평균 66.7%(최근 10년간)에 달한다. 통계는 현재 교정 당국의 재범률 65.5%(2009년) 출발하여 55.7%(2010년), 49.0%(2011년), 67.4%(2012년), 72.8%(2013년), 75.5%(2014년), 70.5%(2015년), 70.3%(2016년), 70.5%(2017년), 69.9%(2018년)에 이르고 있다(범죄백서, 2019). 이는 교정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주고 있다(법무연구원, 2019). 교정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왔으며 그중의 대표적인 노력이 수형자의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는 ‘교정(矯正)’의 단계에서 수형자의 인성 변화를 도모하는 ‘교화(教化)’로의 변화이다(조도현, 2015). 교정단계는 교정당국에서 교화교육(敎化敎育)을 통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정과 교화의 개념

교정의 이념은 형집행법 1조 광의적 교정·교화에 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으로 사용되었다(형집행법 시행령, 2020). 이에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차이점 대한 선행으로 연구자들은 혼용(混用)하여 사용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교정(矯正)이 있어야 교화(敎化)도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

1) 교정의 개념

오늘날 교정(矯正)은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隔離)하여 구금을 확보하여 법률적 근거로 죄의 형벌을 저지르는 범법자들의 행위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형을 강제 집행하고 교정(矯正)하는 행위를 말한다(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교도소에 입소한 후 외부와의 단절과 폐쇄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조광근, 2012, 남상철, 1998).

현재 우리의 교정은 눈부시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변화의 봄부림을 치고 있다. 교도소의 폐쇄(閉鎖)란 가두어두고 징역의 일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교화(敎化) 교육으로의 변화(變化)를 위해 각종 교육을 하고 있고, 입소에 맞는 기초 질서를 따른 타율적 교정교육(矯正教育)을 하고 있다.

행동주의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법 집행에 있어 강화이론은 교도소에서의 보호와 관리라는 종전의 인식을 바꾸어 환경을 변화시켜 자극에 동기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교양교육은 그 수행(performance) 여부에 따라 보상(reward)과 제재(sanction)가 뒤따르는 강화이론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용자가 교양교육을 잘 수행할 때 유쾌한 자극으로 표창(表彰) 행정별인 보상을 주어 정적(靜寂) 강화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숙제 등의 부적(符籍)인 자극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 교육에 적극성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교도소 내 생활의 균형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게 된다(윤담, 2011 재인용).

2) 교화의 개념

교정(矯正)의 역사를 살펴보면 응보형주의 교정문화(矯正文化)와 음지문화가 시대적 역사로 내려오고 있다(남상철, 1998). 이론 교정문화의 시대적 상황이 이어오고 있는 것은 교정은 목적형적으로 타율적·강제적으로 변천되어 오다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구

금(拘禁) 형벌론(刑罰論)에서 교육형(教育刑) 교정문화(矯正文化)로 변천(變遷)이 되어오고 있다(교정백서, 2019). 교정과 같은 교화(敎化)의 변화(變化)는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어 왔고 수형자라 하면 하위계층, 빈곤층의 낮은 학력, 취약한 환경으로 이해되었다. 교화교육(敎化教育)은 수용자들을 변화시켜 재범 예방을 하고 내면의 자기 변화를 위해 수형자의 개별 변화(變化) 신념을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거시적 취약을 맞춤형 교화로의 신념으로 이끌 필요성이 있다.

교정(矯正)과 교화(敎化)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3수준 6단계인 인지적 발달이론에 적용한다면 수형자(受刑者)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는 수형생활의 긴장감으로 감정적 극단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인본주의 이론관점에서 도덕의식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변화 의식을 교육해서 심리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수형자들의 교육 효과로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심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윤담, 2010).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의 3수준 6단계를 볼 때, 1수준은 전 인습 단계로 1단계부터 2단계로 보고 전 인습 단계에서 수형자가 구속 입소를 했을 때 수용자는 자신들이 혐의가 있어 당연히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교도소에서 젖값을 치른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교도소에서 복종과 도덕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단계 교정교육의 명령과 복종 시기에는 수형생활에 적응하고 착하고 올바른 행동이 선의의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수준은 인습 단계로 3단계부터 시작으로 보고 조화를 위한 도덕원리로 교도관들에게 인정을 바라고 자기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점을 포함한 심리를 말한다. 도덕 중심 수준 교화교육 단계로 광범위한 법이 사람들을 착하게 하고 집단의 공동체는 동의하의 장치이므로 수형자들은 상호 민주 절차를 통해서 심성의 변화와 합리성을 부여받아 교정교육(矯正教育)과 상호작용(相互作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도덕 단계가 개인의 바른 양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단계인 법질서 도덕성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을,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교도관이 인정과 행동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교도소에서 4단계를 교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연구했다. 후 인습 단계는 출소 후로 보고 5단계인 사회계약 정신으로 도덕성을 통해서 교도소의 규율을 따라가고 배려와 양심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배려의 정신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는 교화의 신념을 심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6단계는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확신으로 도덕성 신념의 단계로, 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矯正教育)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정상인으로 교정하기 위한 교육, 즉 비행이나 죄를 범한 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수용하고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교육을 통틀어서 말한다. 교육형(教育刑)주의의 시각에서 수형자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개선하여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반도덕성을 극복하여 범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각종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상 “교정(矯正)”과 “교화(教化)”의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정과 교화의 개념

구분 근거	교정(矯正)	교화(教化)
법적 근거	형집행법 1조 근거란 형집행법의 처벌주의 과거 지향적 사고와 외적강화	형집행법 1조 근거는 미래지향적 인성의 변화 내적 강화
이론적 배경	교정의 처벌과 강화행동주의 이론 접근, 장이론, 과업중심	인지치료 이론, 인본주의의 이론 접근, 긍정적 지향의 스스로 자아실현, 인간중심 사회 지향
관련학자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 학자 파블로프, 윗슨, 스키너, 반두라	인지치료학자 엘리스, 인본주의 대표 학자 로저스, 매슬로우
현 실태 교정과 교화의 속성	신체적 자유 제한, 타율적·외형적 교정강화	내적 보상과 신념의 변화요구와 도식화 신념 동기유발 미래지향적 신념 추구
교정·교화 장래의 전망	국가적 비전에 의존한 내재적 타율적 교육 외형적 변화의 요구 사회적응 훈련 도식화를 요구	인본주의적 비전에 심리와 사회 안전망으로 생활의 변화와 자발적이고 수용자에 사회적 공감과 신념의 변화로 재범방지가 기대됨

3) 교도관 교정적 관점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이다. 교도관(矯導官)의 역할은 ‘수용자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정(矯正)이란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교정통계 연보 간수 교정직 교도관 2020). 교도소에서 일을 맡아보는 국가 공무원을 의미한다. 교도관은 범법자(犯法者)의 법 집행 행위를 하는 업무를 한다. 국민의 권력을 법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교정공무원을 말한다. 시대적·역사적으로 보면 교도관을 지칭한다. 교정공무원은 교정과 교화의 주체가 되고 교도소는 구속으로 수용자 전반을 보호하는 교육 기관이다(교정통계 연보, 2020).

본 연구에서 교도소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 21세기 시대적 변화를 이끌 교도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중추적 역할인 교화관(敎化官)으로의 개칭도 고려해볼 것이다.

2. 인본주의 이론의 관점

1) 칼 로저스(Carl Rogers)의 인본주의 이론의 관점

로저스 이론은 ‘내담자 중심 치료’를 개척할 당시 다른 미국 내의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는 어떤 의미에서 수용자들의 ‘치료자 중심’이었다. 우리 교정(矯正)은 선진 교정에서 교화 상담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 내담자들에게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조건으로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학습 촉진자 또는 상담자의 진실성을 가지고 교육 학습 촉진자 또는 상담자가 진실한 인간일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가면이나 가식 없이 학습자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2) 교화적 인본주의의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정 매뉴얼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배움이란 무엇인가? 경험에서 배운다’이다. 교육자의 자세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교수의 믿음이다. 교정이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타율적 인성이 목적이라면 교화는 나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단계의 인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정(矯正)은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일이다.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또한 교화(敎化)는 바른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고 사상 개조를 뜻하는 문화어이다. 교화(敎化)는 영어로 Edification, 교도전화(敎導轉化) 또는 교훈권화(敎訓勸化)의 뜻으로, 범부를 가르쳐 성인이 되게 하고, 의심하는 이를 가르쳐 믿게 하고, 그릇된 길에 있는 이를 가르쳐 바른길, 즉 성도(聖道)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표 2> 콜버그의 교정모형이론 단계별 교도소의 주요 이론적 배경

교정구분 \ 이론단계별 모형	행동주의 이론(교정) ▶ 방향	교정의 처벌과 강화 이론 ▶ 방향	장이론(결합) 인지 이론 ▶ 방향	인본주의 이론(교화) ▶ 방향
교정의 규율 위반자 금지	교정의 일탈, 행동 제한	신체 자유의 제한 타율적 규제	교정교육 인성교육	종교적 종교집회 상담치료 등
교정 수용자 작업	징역의 강제작업	작업 상여금 차등 지급	개방처우 작업	작업희망센터 출역
교정학습실행	문맹자 교육 및 보상	검정고시반 등	자격 취득 후 대학 진학 등	적성에 맞는 취업자격부여
인성교육실행	작업장 출역을 위한 의무교육부여	작업장 규율 위반 시 작업 중지	작업의 계속 등 사회 정착금	작업 상여금의 출소 정착금
교화독서, 불온서적 열독금지	수용자 거실 열독	자율적 독서	독서로 심성순화	신념 변화로의 출소
심리치료 등	의사 진료에 따라 처우	각종 이수명령자 등 집행	각종 심리적 교육을 통해 변경변화	치료 후 심경변화와 재범방지
개방 작업 취업	징역의 강제 작업에서 임함	본인의 의사에 개방처우로 인센티브 부여	사회 정착금 확보 후 출소준비	개방작업 후 정착금 확보
종교활동 등	교도소 내 집회장소의 종교의 자유	집회 장소에서 종교집회 실행	자율적 종교행사의 의식	종교의 신념구축 추구 등

위 <표 2>를 살펴보면, 형집행법 법률을 근거로 하여 1단계→2단계(교도소 일반적 교정교육 인지행동이론), 3단계→4단계(출소 준비 교정교육 + 교화혼용교육 인본주의이론)까지 교화로의 최종단계의 신념 변화 단계로 발전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교정교육에서 교화신념 교육으로의 흐름으로 변화한다.

본 연구를 하면서 교도소의 법치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언어와 도덕성을 빙자해서 교정(矯正)·교화(教化)했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 교화의 태동은 인권위의 발족으로 교도소 규율이 자연스럽게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규범의 혼란과 법률적 재정비를 급속도로 필요로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 O와 C 교도소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통해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가직 교정공무원은 전국 교류가 많은 관계로 지역의 발령받은 교도관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하였다. 교도관의 ‘교정(矯正)’ ‘교화(教化)’의 개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 델파이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도관이 교정·교화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내고자 델파이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차례 걸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메일, 직접 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1) 내용타당도 비율(CVR)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된 것을 타당도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CVR = \frac{Ne - \frac{N}{2}}{\frac{N}{2}}$$

N: 응답 사례수
Ne: ‘타당하다’고 응답한 토론자 수(4점 or 5점)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응답 사례수(N), Ne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토론자의 빈도수로, 리커트 척도의 4점(타당하다), 5점(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즉 도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 토론자의 50% 이상 일 때, 그 문항은 내용 타당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타당하다’고 응답한 토론자의 수가 50%보다 적을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음수로 나타난다. 50%일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 100%일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1로 나타난다. 즉 ‘타당하다’고 응답한 토론자의 수가 50%에서 100% 사이일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에서 1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Lawshe와 Steinberg(1955)가 제시한 데이터 값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토론자의 수에 따라 최솟값이 결정된다. 즉 유의도는 .05 수준에서 전문가 토론자 수에 따른 최솟값 이상의 내용타당도 비율(CVR) 값을 가진 항목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 수와 내용타당도 비율의 최솟값과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델파이 전문가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솟값(p<.05)

수(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35	40
CVR 최소값	.99	.99	.99	.75	.78	.62	.59	.56	.54	.51	.49	.42	.37	.33	.31	.29

2) 안정도(stability)

안정도(stability)는 토론자들의 응답 일치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자의 설문응답 일치성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치성이 높은 경우 안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정도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변이계수의 판단기준은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안정적이다. 변이계수가 0.5~0.8인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변이계수가 0.8 이상이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현, 2018).

<표 4> 변이계수의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0 < \text{변이계수} \leq .5$	높은 수준의 합의 정도, 추가 라운드가 필요 없음
$.5 < \text{변이계수} \leq .8$	합의 정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 추가 라운드를 고려할 수 있음
$\text{변이계수} \geq .8$	낮은 수준의 합의 정도, 추가 라운드가 필요함

3) 타당도(validity)

타당도(valid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느냐는 것으로,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한다(성태제, 2005). 델파이 조사 연구는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의견 수렴이 연구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의도와 수렴도를 분석하게 된다. 수렴도는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가 수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Martino, 1970). 수렴도는 사분위수 75%의 응답자가 예측한 Q_3 와 25% 응답자가 예측한 Q_1 을 이용하여 구한다.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 모두 수렴됐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커져 Q_1 과 Q_3 가 벌어져 감에 따라 그 값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수렴도의 판단 기준은 .0~.5이하의 범위일 경우 수렴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이건남, 2008: 66; 이윤조, 2009: 1975;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이를 수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이종성, 2001).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Q_3 : 75% 사분위 수
 Q_1 : 25% 사분위 수

합의도는 사분위수 Q_3 와 Q_1 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수식화하여 응답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합의도는 Q_1 과 Q_3 가 일치하여 완전 합의 됐을 때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커져 Q_1 과 Q_3 가 벌어져감에 따라, 그 수치는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합의도의 판단 기준은 .75이상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이건남, 2008, 66; 이윤조, 2009, 75;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합의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이종성, 2001).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dn}$$

Q_3 : 75% 사분위 수
 Q_1 : 25% 사분위 수
 Mdn : 중앙값

4)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려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된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는 것을 말한다(성태제, 2005). 델파이 조사 방법에서의 신뢰도 확보는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엄격히 코딩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전문가 토론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외에도 2명 이상의 연구 보조자가 연구자가 범주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각각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박성규, 2014). 델파이 조사 연구의 신뢰도는 일반화 가능도 계수(generalization coefficient)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화 가능도 계수는 Cronbach's-a 계수와 동일하다(이종성, 1988).

2. 연구절차

1) 델파이 조사 단계

적용된 델파이 조사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토론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1단계이고, 2단계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폐쇄형 설문지를 구성 후 2차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3단계는 폐쇄형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동일한 집단에 3차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의 합의 정도를 묻는 단계이다.

2) 전문가 토론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일선교도소 교도관 전문가들을 다양한 경로로 소개를 받아 연구에 참여할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다. 추천받은 교도관 전문가 토론자들에게 연구의 주제, 목적, 조사 횟수, 익명성 보장 등을 전화와 메일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토론자를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교정·교화의 개념 인식을 추출하기 위해 교도관의 실무경험이 있는 교도관 50명을 전문가 토론자로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세부 특성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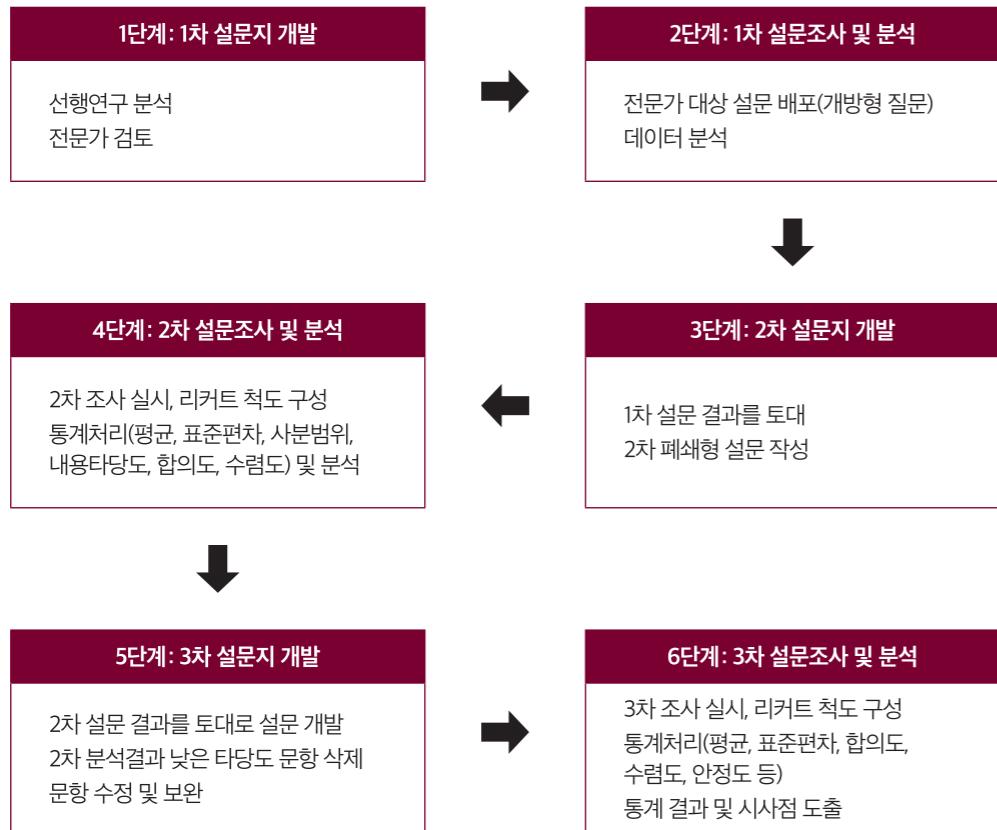
<표 5> 델파이 연구 참여자의 세부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별	남자	50	92.6	98.0
	여자	1	1.9	2.0
	전체	51	94.4	100.0
연령	시스템	3	5.6	
	40세 이하	15	27.8	29.4
	41세~50세	13	24.1	25.5
	51세 이상	23	42.6	45.1
근무 연수	전체	51	94.4	100.0
	시스템	3	5.6	
	10년 이하	18	33.3	34.6
	11년~30년	25	46.3	48.1
결측	31년 이상	9	16.7	17.3
	전체	52	96.3	100.0
	시스템	2	3.7	
	기혼	43	79.6	81.1
결혼 여부	미혼	10	18.5	18.9
	전체	53	98.1	100.0
	시스템	1	1.9	
자녀 수	0명	12	22.2	23.1
	1명	8	14.8	15.4
	2명	29	53.7	55.8
	3명	3	5.6	5.8
	전체	52	96.3	100.0
학력	시스템	2	3.7	
	대졸이상	8	14.8	72.7
	고졸이하	3	5.6	27.3
	전체	11	20.4	100.0
종교	시스템	43	79.6	
	불교	4	7.4	36.4
	기독교	1	1.9	9.1
	천주교	2	3.7	18.2
	무교	4	7.4	36.4
결측	전체	11	20.4	100.0
	시스템	43	79.6	
전체		54	100.0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6단계로 델파이 설문지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림 1> 델파이 설문조사



4) 심층면담

교화교육(敎化敎育)에 관한 심층면담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교도관을 중심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심층면담의 질문은 교도관으로서 교화교육을 들었을 때의 감정, 생각, 교화교육이 나에게 형성된 계기, 교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후 직무와 관련하여 나에게 변화된 것, 교화교육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 교화교육을 방해하는 요인, 수형자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교육,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의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기대, 교화교육 전면시행이 교도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의 설문과 면접조사는 교정과 교화에 관련해 생각나는 키워드 5개를 묻는 비구조화(개방형) 형태로 조사하여 교정과 교화에 대한 키워드를 각각 62개, 54개를 선정하였다. 결과는 교정하면 생각나는 것이 구금(6.3%), 교도관(5.9%), 수용자(5%), 질서의 확립(4.5%) 등 강제성의 타율적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교화는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종교적 신념(6%), 사람을 만드는 것(6%), 재사회화(5.5%), 심성훈련(4.6%), 심리상담(4.1%), 인성교육(4.1%) 등으로 나타났다.

교정과 교화에 관한 1차 키워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교정과 교화의 키워드

번호	교정 키워드	빈도	백분율(%)	교화 키워드	빈도	백분율(%)
1	교도소	20	9.0	종교적 신념	15	6.9
2	구금	14	6.3	교육을 통한 심성변화	13	6.0
3	교도관 가르침	13	5.9	사람을 만드는 것	13	6.0
4	수용자	11	5.0	재사회화	12	5.5
5	질서의 확립	11	5.0	심성훈련	10	4.6
6	바로잡는 것	10	4.5	심리상담	9	4.1
7	마음 챙김	9	4.1	인성교육	9	4.1
8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다	9	4.1	신념체계의 변화	8	3.7
9	바른 언행 가르치는 것	8	3.6	직업교육	8	3.7
10	응보주의	8	3.6	인권	7	3.2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설문과 면접조사는 합의 도출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1차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조사된 키워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키워드별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했다.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의 정량적인 분석결과, 그 기준값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키워드를 제외한 교정과 교화에 각각 29개¹⁾, 25개²⁾ 키워드가 남아 키워드들은 3차 설문과 면접조사에 포함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과 면접조사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정은 응보적, 이를 수 없는 꿈, 이상 현실의 차이가 있고 회복 관계가 먼 합의도는 가족 회복, 따뜻한 가정, 마음 챙김, 좋은 사람, 인위적 행동, 인위적 행동을 바르게 잡는 타율적 행동이 가장 많았다.

설문과 면접조사에 교정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 분석결과를 보면 타율적 교육함과 가르치고 교육, 수용자 변화, 생각의 변화, 교도소, 사형집행도, 격리, 안전 질서, 엄격한 규율, 부정적 이미지, 엄격한 교정질서 확립이 가장 많았다.

<표 7> 교정의 수렴도·합의도·내용타당도(CVR) 분석결과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가르침	50	3.4	.97	3.00	4.00	4.00	43	.75	.50	.72
교육을 시킴	50	3.44	1.01	3.00	4.00	4.00	41	.75	.50	.64
가족관계회복	50	3.26	1.03	2.75	3.00	4.00	38	.58	.63	.52
따뜻한 가정	50	3.1	1.13	2.00	3.00	4.00	34	.33	1.00	.36
마음챙김	50	3.08	1.05	2.00	3.00	4.00	34	.33	1.00	.36
좋은 사람	50	2.94	.93	2.00	3.00	4.00	33	.33	1.00	.32
집에 가려는 사람	50	2.88	1.04	2.00	3.00	4.00	35	.33	1.00	.40
차가운 머리 따뜻한 마음	50	2.96	1.03	2.00	3.00	4.00	34	.33	1.00	.36
상담	50	3.32	1.1	2.75	4.00	4.00	38	.69	.63	.52
사회적응 훈련과정	50	3.44	1.05	3.00	4.00	4.00	42	.75	.50	.68
재사회화	50	3.4	1.11	3.00	4.00	4.00	39	.75	.50	.56
게으름 교정	50	2.6	1.09	2.00	3.00	3.00	26	.67	.50	.04

1) 가르침, 교육을 시킴, 사회적응 훈련과정, 재사회화,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다, 습관의 변화, 행동제한, 타율적 질서, 바로잡는 것, 바른 언행을 가르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교회, 교도소, 구금, 징벌, 수갑, 수용자, 수용질서, 출소, 격리, 기결, 미결, 질서의 확립, 안전질서, 직업훈련, 결과를 책임짐, 조그만 사회, 인권제한, 자유의 제한.

2)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적응,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통한 심성변화, 정서함양, 내면의 심성변화, 뉘우침, 따뜻한 가족, 마음 치유, 심리상담, 심리치료, 심성훈련, 미래, 사회적 처우, 재사회화, 사회복귀, 인격 형성, 인성교육, 자립의지, 개선, 지속적인 관심, 자신의 죄를 깨달음, 올바르게 바르게 잡는 것, 새사람,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보듬다.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다	50	3.56	.91	3.00	4.00	4.00	45	.75	.50	.80
인위적으로 행동을 바르게	50	3.38	.99	3.00	3.00	4.00	42	.67	.50	.68
습관의 변화	50	3.56	.95	3.00	4.00	4.00	44	.75	.50	.76
신체적 훈련	50	3.18	1.04	2.00	3.00	4.00	33	.33	1.00	.32
행동제한	50	3.56	.95	3.00	4.00	4.00	44	.75	.50	.76
타율적 질서	50	3.52	.97	3.00	4.00	4.00	41	.75	.50	.64
강제적 변화 요구	50	3.3	1.07	2.00	3.00	4.00	37	.33	1.00	.48
개조	50	3.1	1.22	2.00	3.00	4.00	33	.33	1.00	.32
바로잡는 것	50	3.8	.83	3.00	4.00	4.00	46	.75	.50	.84
바른 언행 가르치는 것	50	3.62	.88	3.00	4.00	4.00	45	.75	.50	.80
생각을 바꾸는 것	50	3.38	.99	3.00	4.00	4.00	40	.75	.50	.60
도둑놈 다스리는 것	50	3.08	1.12	2.00	3.00	4.00	35	.33	1.00	.40
회유	50	2.62	.99	2.00	2.00	3.00	24	.50	.50	-.04
교화	50	3.36	1.06	3.00	4.00	4.00	41	.75	.50	.64
순화	50	3.22	1.06	3.00	3.00	4.00	39	.67	.50	.56
교도관 가르침	50	3.3	1.11	2.00	3.50	4.00	37	.43	1.00	.48
교도소	50	3.64	.96	3.00	4.00	4.00	45	.75	.50	.80
구금	50	3.72	1.03	3.00	4.00	4.00	43	.75	.50	.72
사형	50	3.24	1.27	2.00	3.50	4.00	32	.43	1.00	.28
사형집행	50	3.34	1.24	2.00	4.00	4.00	34	.50	1.00	.36
징벌	50	3.6	1.01	3.00	4.00	4.00	41	.75	.50	.64
수갑	50	3.58	1.05	3.00	4.00	4.00	41	.75	.50	.64
수용자	50	3.64	.88	3.00	4.00	4.00	45	.75	.50	.80
수용질서	50	3.82	.85	3.00	4.00	4.00	47	.75	.50	.88
망루대	50	2.48	1.13	2.00	2.00	3.00	23	.50	.50	-.08
출소	50	3.3	1.11	3.00	3.50	4.00	40	.71	.50	.60
격리	50	3.58	.88	3.00	4.00	4.00	46	.75	.50	.84
기결	50	3.46	.97	3.00	4.00	4.00	41	.75	.50	.64
미결	50	3.38	1.03	3.00	4.00	4.00	41	.75	.50	.64
질서의 확립	50	3.82	.87	3.00	4.00	4.00	48	.75	.50	.92
질서통제	50	3.98	.8	3.75	4.00	5.00	48	.69	.63	.92
안전질서	50	3.92	.88	3.75	4.00	4.25	47	.88	.25	.88
엄격한 규율	50	3.94	.79	3.00	4.00	4.25	48	.69	.63	.92
직업훈련	50	3.52	.99	3.00	4.00	4.00	42	.75	.50	.68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폭행	50	2.74	1.24	2.00	3.00	4.00	27	.33	1.00	.08
죄수	50	3	1.28	2.00	3.00	4.00	32	.33	1.00	.28
법질서 확립	50	3.86	.9	3.00	4.00	5.00	46	.50	1.00	.84
기초질서 확립	50	3.82	1.04	3.00	4.00	5.00	46	.50	1.00	.84
규율	50	3.9	.86	3.00	4.00	5.00	48	.50	1.00	.92
범죄	50	3.6	1.14	3.00	4.00	5.00	41	.50	1.00	.64
결과를 책임짐	50	3.6	1.07	3.00	4.00	4.00	45	.75	.50	.80
옹보주의	50	3.46	.97	3.00	3.00	4.00	43	.67	.50	.72
부정적 이미지	50	2.96	1.11	2.00	3.00	4.00	34	.33	1.00	.36
이룰 수 없는 꿈	50	2.8	1.07	2.00	3.00	3.00	34	.67	.50	.36
이상과 현실의 차이	50	3.42	1.03	3.00	3.00	4.00	44	.67	.50	.76
현실의 벽	50	3.42	.95	3.00	3.50	4.00	43	.71	.50	.72
조그만 사회	50	3.48	.91	3.00	4.00	4.00	43	.75	.50	.72
인권제한	50	3.6	.99	3.00	4.00	4.00	42	.75	.50	.68
자유의 제한	50	3.9	.93	4.00	4.00	4.25	45	.94	.13	.80
형평성 유지	50	3.42	1.13	3.00	3.50	4.00	40	.71	.50	.60

한편, 교화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 분석결과를 보면 가족 관계, 공동생활 적응, 뉘우침, 마음 치유, 사회복귀, 심화훈련, 희망이 가장 높았다.

<표 8> 교화의 수렴도·합의도·내용타당도(CVR) 분석결과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가족관계 회복	50	3.44	1.03	3.00	4.00	4.00	41	.75	.50	.64
친구관계 회복	50	3.24	1.02	3.00	3.00	4.00	40	.67	.50	.60
공동생활적응	50	3.44	.95	3.00	4.00	4.00	43	.75	.50	.72
공동체의식 함양	50	3.42	1.07	2.75	4.00	4.00	38	.69	.63	.52
시민의식 함양	50	3.46	.99	3.00	4.00	4.00	41	.75	.50	.64
교육을 통한 심성변화	50	3.48	.99	3.00	4.00	4.00	40	.75	.50	.60
교육프로그램	49	3.33	.99	3.00	3.00	4.00	39	.67	.50	.59
정서함양	50	3.46	.97	3.00	4.00	4.00	42	.75	.50	.68
정신교육	50	3.36	.98	3.00	3.00	4.00	41	.67	.50	.64
종교적 신념	50	2.74	1.07	2.00	3.00	3.25	30	.58	.63	.20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내면의 심성변화	50	3.38	1.03	3.00	4.00	4.00	41	.75	.50	.64
뉘우침	50	3.68	.82	3.00	4.00	4.00	47	.75	.50	.88
따뜻한 가족	50	3.5	.91	3.00	4.00	4.00	43	.75	.50	.72
마음치유	50	3.44	.95	3.00	4.00	4.00	40	.75	.50	.60
심리상담	50	3.6	.83	3.00	4.00	4.00	45	.75	.50	.80
신념체계의 변화	50	3.34	.92	3.00	3.00	4.00	40	.67	.50	.60
심리치료	50	3.54	.91	3.00	4.00	4.00	42	.75	.50	.68
심성훈련	50	3.58	.93	3.00	4.00	4.00	42	.75	.50	.68
웃음치료	50	3.16	1.08	2.00	3.00	4.00	37	.33	1.00	.48
음악치료	50	3.26	1.1	2.00	3.00	4.00	37	.33	1.00	.48
사명감	50	3.08	1.08	2.00	3.00	4.00	35	.33	1.00	.40
사람을 만드는 것	50	3.16	1.15	2.00	3.00	4.00	34	.33	1.00	.36
미래	50	3.44	.93	3.00	4.00	4.00	42	.75	.50	.68
사회적 처우	50	3.46	.84	3.00	4.00	4.00	44	.75	.50	.76
재사회화	50	3.58	.86	3.00	4.00	4.00	43	.75	.50	.72
사회복귀	50	3.74	.8	3.00	4.00	4.00	46	.75	.50	.84
인격 형성	50	3.5	.99	3.00	4.00	4.00	41	.75	.50	.64
인성교육	50	3.52	.99	3.00	4.00	4.00	42	.75	.50	.68
인권	50	3.12	1.14	2.00	3.00	4.00	34	.33	1.00	.36
자격증	50	3.06	1.1	2.00	3.00	4.00	35	.33	1.00	.40
직업교육	50	3.22	1.15	2.00	3.00	4.00	37	.33	1.00	.48
직업인 양성	50	3.12	1.15	2.00	3.00	4.00	34	.33	1.00	.36
출소 후 생활력 배양	50	3.4	1.12	2.00	4.00	4.00	37	.50	1.00	.48
자립의지	50	3.46	1.09	3.00	4.00	4.00	39	.75	.50	.56
재범방지	50	3.4	1.12	2.00	4.00	4.00	37	.50	1.00	.48
준법정신함양	50	3.3	1.09	2.00	3.00	4.00	37	.33	1.00	.48
자율적인 질서확립	50	3.22	1.17	2.00	3.00	4.00	35	.33	1.00	.40
감화	50	3.1	1.16	2.00	3.00	4.00	35	.33	1.00	.40
개과천선	50	3.16	1.13	2.00	3.00	4.00	37	.33	1.00	.48
개선	49	3.39	1.08	3.00	4.00	4.00	39	.75	.50	.59
갱생	50	3.28	1.11	2.00	4.00	4.00	37	.50	1.00	.48
지속적인 관심	50	3.38	1.01	3.00	4.00	4.00	40	.75	.50	.60
측은지심배양	50	2.96	1.01	2.00	3.00	4.00	34	.33	1.00	.36
친절	50	3.14	1.05	2.00	3.00	4.00	36	.33	1.00	.44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행복	50	3.18	1.16	2.00	3.00	4.00	35	.33	1.00	.40
화해	50	3.22	1.11	2.00	3.50	4.00	36	.43	1.00	.44
희망	50	3.46	1.15	2.00	4.00	4.00	37	.50	1.00	.48
자신의 죄를 깨달음	50	3.46	1.22	3.00	4.00	4.00	39	.75	.50	.56
자원봉사	50	3.1	1.04	2.00	3.00	4.00	37	.33	1.00	.48
인생의 전환	50	3.4	1.09	2.75	4.00	4.00	38	.69	.63	.52
올바르게 바르게 잡는 것	50	3.52	1.03	3.00	4.00	4.00	42	.75	.50	.68
안정감	50	3.4	1.03	3.00	3.00	4.00	41	.67	.50	.64
새사람	50	3.34	1.02	3.00	4.00	4.00	39	.75	.50	.56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보듬다	50	3.5	.99	3.00	4.00	4.00	42	.75	.50	.68

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3차 설문과 면접조사에서는 2차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높은 동의를 얻은 키워드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및 중앙값을 제시하고, 제시된 키워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검증했다. 3차 설문과 면접조사 결과에 대해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를 정량적인 분석결과, 그 결과 기준값을 충족시키는 키워드는 교정과 교화에 각각 24개³⁾, 9개⁴⁾ 키워드였다. 3회의 추출단계의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추출된 키워드들의 유사속성을 추출한 결과, 교정에서는 4개의 속성영역을 추출하였다. 심층 면담단계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교도관들의 교도소와 수용자에 관한 교정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교화로의 긍정적 이미지와 신념으로 바로잡기 위해 교도관들의 인식변화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대체로 교화와 교화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3차 델파이는 설문과 면접조사는 교정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는 교도관의 직업적 영향으로 교화적 징벌집행, 직업훈련 인권의 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교정의 합의도·수렴도·안정도 분석 3차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가르침	50	3.6	.6	3.0	4.0	4.0	30	.75	.50	.18
교육을 시킴	50	3.6	.8	3.0	4.0	4.0	31	.75	.50	.21
사회적응 훈련과정	50	3.6	.7	3.0	4.0	4.0	31	.75	.50	.20
재사회화	50	3.6	.8	3.0	4.0	4.0	28	.75	.50	.23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다	50	3.6	.7	3.0	4.0	4.0	32	.75	.50	.21
습관의 변화	50	3.7	.8	3.0	4.0	4.0	30	.75	.50	.21
행동제한	50	3.7	.8	3.0	4.0	4.0	27	.75	.50	.22
타율적 질서	50	3.6	.9	3.0	4.0	4.0	27	.75	.50	.24
바로잡는 것	49	3.6	.8	3.0	4.0	4.0	28	.75	.50	.21
바른 언행 가르치는 것	50	3.5	.8	3.0	4.0	4.0	31	.75	.50	.23
생각을 바꾸는 것	50	3.6	.9	3.0	4.0	4.0	29	.75	.50	.24
교화	50	3.5	.9	3.0	3.0	4.0	23	.67	.50	.25
교도소	50	3.5	1.0	3.0	4.0	4.0	30	.75	.50	.29
구금	50	3.5	1.1	3.0	4.0	4.0	30	.75	.50	.31
징벌	50	3.3	1.1	2.0	4.0	4.0	26	.50	1.00	.34
수갑	50	3.2	1.1	2.8	3.0	4.0	21	.58	.63	.34
수용자	50	3.6	.9	3.0	4.0	4.0	30	.75	.50	.26
수용질서	50	3.7	.9	3.0	4.0	4.0	33	.75	.50	.25
출소	50	3.6	.9	3.0	4.0	4.0	34	.75	.50	.26
격리	50	3.5	1.0	3.0	4.0	4.0	30	.75	.50	.28
기결	50	3.4	1.1	3.0	4.0	4.0	26	.75	.50	.31
미결	50	3.5	1.0	3.0	4.0	4.0	28	.75	.50	.30
질서의 확립	50	3.8	.8	3.0	4.0	4.0	33	.75	.50	.21
안전질서	50	3.8	.8	3.0	4.0	4.0	31	.75	.50	.23
직업훈련	50	3.5	1.0	3.0	3.0	4.0	24	.67	.50	.28
결과를 책임짐	50	3.6	.9	3.0	4.0	4.0	31	.75	.50	.25
조그만 사회	50	3.6	.8	3.0	4.0	4.0	28	.75	.50	.22
인권제한	50	3.3	.9	3.0	3.0	4.0	22	.67	.50	.28
자유의 제한	50	3.6	1.0	3.0	4.0	4.0	30	.75	.50	.27

- 3) 가르침, 교육을 시킴, 사회적응 훈련과정, 재사회화,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다, 습관의 변화, 행동제한, 타율적 질서, 바로잡는 것, 바른 언행을 가르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교도소, 구금, 수용자, 수용질서, 출소, 격리, 기결, 미결, 질서의 확립, 안전 질서, 결과를 책임짐, 조그만 사회, 자유의 제한.
 4) 공동생활적응, 시민의식 함양, 사회적 처우, 재사회화, 사회복귀, 개선, 지속적인 관심, 올바르게 바르게 잡는 것,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보듬다.

한편, 교화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 측면을 보면 공동생활적응, 시민 의식함양, 교육을 통한 심성 변화, 재사회화, 사회복귀, 지속적인 관심,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보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교화의 합의도·수렴도·안정도 분석 3차

구분	N	M	SD	백분위수			4,5번 응답자수	합의도	수렴도	CVR
				25.0	50.0	75.0				
가족관계 회복	50	3.4	.8	3.0	3.0	4.0	23	.67	.50	.24
공동생활적응	50	3.7	.8	3.0	4.0	4.0	33	.75	.50	.23
시민의식 함양	50	3.6	.9	3.0	4.0	4.0	29	.75	.50	.26
교육을 통한 심성변화	50	3.4	1.1	2.8	3.5	4.0	25	.64	.63	.31
정서함양	50	3.3	.9	3.0	3.0	4.0	21	.67	.50	.29
내면의 심성변화	50	3.3	1.0	3.0	3.0	4.0	23	.67	.50	.30
뉘우침	50	3.2	1.0	2.0	3.0	4.0	22	.33	1.00	.32
따뜻한 가족	50	3.3	1.0	3.0	3.0	4.0	20	.67	.50	.30
마음치유	50	3.3	1.0	3.0	3.0	4.0	23	.67	.50	.30
심리상담	50	3.4	1.0	3.0	3.0	4.0	23	.67	.50	.29
심리치료	50	3.3	1.0	3.0	3.0	4.0	22	.67	.50	.30
심성훈련	50	3.4	.9	3.0	3.0	4.0	24	.67	.50	.27
미래	50	3.4	.9	3.0	3.0	4.0	23	.67	.50	.28
사회적 처우	50	3.4	.9	3.0	3.5	4.0	25	.71	.50	.26
재사회화	50	3.5	.8	3.0	4.0	4.0	29	.75	.50	.24
사회복귀	50	3.5	.8	3.0	4.0	4.0	28	.75	.50	.24
인격 형성	50	3.4	.9	3.0	3.0	4.0	24	.67	.50	.26
인성교육	50	3.3	.9	3.0	3.0	4.0	23	.67	.50	.26
자립의지	50	3.4	.8	3.0	3.0	4.0	23	.67	.50	.23
개선	50	3.5	.8	3.0	4.0	4.0	27	.75	.50	.24
지속적인 관심	50	3.6	.8	3.0	4.0	4.0	30	.75	.50	.22
자신의 죄를 깨달음	50	3.3	1.0	2.0	3.0	4.0	24	.33	1.00	.30
올바르게 바르게 잡는 것	50	3.6	.8	3.0	4.0	4.0	28	.75	.50	.23
새사람	50	3.3	.9	3.0	3.0	4.0	21	.67	.50	.28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보듬다	50	3.5	.8	3.0	4.0	4.0	27	.75	.50	.23

4. 교정과 교화의 속성 추출

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교정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속성들을 묶어 개념화를 실시하여,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표 11> 교정의 속성

키워드	영역	설명
교도소	신체의 자유를 제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행동의 제한, 교도소의 생활지도를 제한함.
행동 제한		
자유의 제한		
구금		
수용자		
수용질서		
격리		
결과를 책임짐		
기결		
미결	타율적 질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 규칙,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
타율적 질서		
질서의 확립		
안전질서	타율적 규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 규칙,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
가르침		
바른 언행 가르치는 것		
교육을 시킴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다	타율적 교육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습관의 변화		
바로잡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사회적응 훈련과정	타율적 변화 요구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조그만 사회		
재사회		
출소		
사회 적응성 훈련	사회적응 훈련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 관계의 원만성 따위이다.
사회적응 훈련		
재사회		
출소		

추출된 교정의 속성을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교도소 수감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 받게 되고, 교도소 내에서 타율적 규제, 교육, 타율적 변화요구, 사회적응성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교도소를 출소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II. 공공갈등으로서

교정시설 이전·신설의 문제

III. 해외 사례를 통한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 해소 검토

IV. 결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국문 요약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자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재고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 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 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 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교정시설, 비선호시설, 공공갈등, 행정절차의 정보공개, 지역사회와의 협력



I. 서론

우리나라는 단기압축 고도성장이라는 성과 지향적 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지난 세월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결과 현재도 정부 주도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나 좀처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예가 드물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대체로 과거부터 정부가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비선호시설을 이전·신설하면서 야기되었고, 적절히 해소하기보다는 억제하고 무시하는 방안을 주로 선택해왔던 우리들의 과오(過誤)에 따른 귀결이라 할 수 있다.¹⁾

공공갈등은 ‘공공의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 집단 및 공공기관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의견, 이해, 상황, 상태 등에서 대립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²⁾ 갈등 관계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그 전제가 된다.³⁾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한 공공갈등⁴⁾ 이외에도 과거에는 그 예가 없었으나 2013년 성남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늘어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⁵⁾

이러한 공공갈등은 초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고, 장기화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감정이 개입되어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결국 사회문제화된 예 또한 적지 않다.⁶⁾ 그리고 이렇게 갈등관리가 잘 안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공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제대로 된 공공갈등관리제도가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의 이전·신설

1) 주된 비선호시설(기피시설)에는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변전소, 화력발전소, 군사시설, 송전탑, 쓰레기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화장터 및 장묘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마약 및 알콜중독자 치료시설 등이 있다.

2) 윤종설·서정철, (2017), ‘공공갈등 영향분석제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25, 13면.

3) 김민영·배상균·박경규, (2018),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AA-09, 17면.

4) 국내 문헌상 근대 교정시설에 관한 최초의 공공갈등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1912년 경성형무소 이전·신설사례라 할 수 있다. ‘경성형무소는 1912년 9월 3일 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해 신설되었다. 한일합방 무렵 독립운동 등으로 전국 감옥 수용인원이 급증하게 되자, 용산 청파동에 부지를 선정하고 약 2만원 가량의 공사비를 들여 토목공사를 마쳤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고 마포 공덕리로 이전하여 신축하였다.’(법무부 교정본부, (2010, 대한민국 교정사 (I), 255면).

5) 손외철, (2015),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보호관찰 제15권 제2호, 44면 이하.

6) 유재봉·주상현, (2016), ‘공공갈등 발생요인과 갈등관리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459면.

이 단지 해당 지역주민의 금전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주체들 간에 분열과 반목을 초래하는 갈등요소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지 대한 인식 부재와 해당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편견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제도가 미흡하여 적기(適期)에 갈등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교정시설의 집단감염 예방 및 시설 현대화 조치를 위해서도 과밀수용 문제가 선결 조건이 되고 있어 최근 법무부에서도 교도소와 구치소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⁸⁾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사례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갈등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정보공유를 통해 공공갈등의 예방에 힘써야 함은 자명(自明)하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하여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전제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으로서 교정시설 이전·신설의 문제와 국내외 사례를 통한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 해소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법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7) 유병철, (2016),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96-99면 참조.

8) YTN(2021.09.11.), ‘법무부, 교도소·구치소 13곳 신축·이전... “과밀수용 해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11135073221 (최종검색: 2023.7.24.).

II. 공공갈등으로서 교정시설 이전·신설의 문제

1. 과거 교정시설의 이전·신설 추진사례별 분석

1)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추진된 사례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에 관하여 그 사회적 필요성과 달리 교정시설 자체가 가지는 이미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근대 교정시설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 범죄 발생은 필연적이기에, 범죄자를 수용해야 하는 교정시설도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에 관하여 법무부 교정국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내용도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 정보자료에 해당하기에 최신 현황에 대한 검토가 제한되므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된 사례로서, 2015년 기준으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영월교도소, 밀양구치소, 해남교도소, 상주교도소, 정읍교도소, 장흥교도소, 광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대구교도소, 전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원주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및 서울남부교도소 등이 있었다.¹⁰⁾ 2016년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사례를 분석한 후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①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②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 ③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방안, ④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⑤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⑥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¹⁾

2) 지역사회와의 갈등해소가 원활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된 사례

지역사회와의 공공갈등문제로 교정시설 이전·신설이 지연된 사례 중 가장 대표 사례는 안양교도소 사례라 할 수 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설립되어 2023년인 올해에는 설립 6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현재 1900여 명의 미·기결수가 수용되어 있고, 국내 교도소와 구치소 전국 53곳(민영교도소 포함)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더욱이 이미 2010년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아 붕괴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여 이전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도권 인근에서 이전을 반기는 지역이 없어, 결국 현 부지에서 재건축을 통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화되어 결국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약사항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정치성 구호만 난무하여 교도소 이전만 20년간 계속 공약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후 법무부와 재건축 관련 소송에서도 2014년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안양시이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다행히 최근 2022년 8월에 법무부와 안양시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이전사업' 협약을 맺어 현 안양교도소 전체 부지 중에서 일부에 안양구치소를 신축하고, 안양교도소는 별도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남은 부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¹²⁾ 다만, 안양교도소 이전·신설 문제는 여전히 남아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성남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이전·신설 문제가 또 다른 대표적인 장기 미해결 사례라 할 수 있다. 2013년 9월 성남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따라 법무부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원점 재검토'로 물러난 뒤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안이나 논의의 진척 없이 미해결된 상태로 담보(踏步)하고 있다.¹³⁾

한편, 경상남도 거창군의 거창구치소 포함 법조타운 건설 반대 갈등의 경우에는 공공갈등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해소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과거 경남 거창지역에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없어, 오랜 기간 거창경찰서 대용구치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지법 및 거창지청 등 거창법조타운 내에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이 해당 건설 예정 지역

9) 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주4), 255면.

10) 송영삼, (2016),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112-114면.

11) 송영삼, 앞의 주10), 121-124면.

12) 쿠키뉴스(2023.01.26.), '붕괴 위험 안양교도소, '안전'이 최대 화두로 등장',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260118> (최종검색: 2023.7.24.).

13) YTN(2019.03.28.),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재점화'…야탑동 주민반발 확산', <https://www.ytn.co.kr/view/AKR20190328153200061> (최종검색: 2023.7.24.).

이 축사 등으로 인해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5년 착공 후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주변에 학교와 주택단지가 근접해 있다 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2016년 11월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한때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상황이 계속되자 경남도청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에 따라 2018년 지역주민과 거창군, 법무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후 2019년 10월 주민투표 결과 건설 찬성이 높게 나오면서 공사가 재개되었고, 무사히 완공되어 현재 개청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협의 결과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갈등 해결 전국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¹⁴⁾

3) 검토: 공공갈등 발생 및 심화 원인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정절차 부재(공공갈등 관리체계 문제)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다원주의(Pluralism)는 타인과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다른 것을 전제하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 하에서 이해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 문제는 가치갈등이 아닌 이해갈등에 속하며, 따라서 그 해결이 어려운 갈등유형이기는 하나 경제적 이해 및 분배, 신뢰형성 등에 의해 협상과 조정이 가능한 갈등이라 할 수 있다.¹⁵⁾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의식이 약했던 점,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의사를 적절히 투영하는 행정절차법규의 미비가 이러한 공공갈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¹⁶⁾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주민과의 공공갈등의 발생 이유로 ① 절차가 민주적으로 불공정하고, ② 사업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결여되었고, ③ 협상 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비협조적인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¹⁷⁾

현재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제도 체계를 살펴보면,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령체계와 갈등관리 법령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중요한 갈등관리 법령체

14) TV조선(2023.02.12.), '주민투표로 갈등 봉합…거창구치소 완공',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13/2023021390044.html (최종검색: 2023.7.24.).

15) 김대중·김현정·김세진, (2021), 한국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본 조정, 참여형 갈등관리, 예방적 접근의 활용과 해외시스템 연구, 집문당, 11면.

16) 유병철, 앞의 주7), 86면 참조.

17) 손외철, 앞의 주5), 50면.

계의 경우에 상위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도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¹⁸⁾ 따라서 교정시설 이전·신설을 포함한 갈등관리 법령체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2)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서울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8년 조사연구에 따르면, 현실적인 사회적 필요성 인식과 별개로 교정시설인 교도소, 구치소는 물론 보호관찰소가 인근 거주지역에 이전·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이 비선호시설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¹⁹⁾

특히 거주지역에 교정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67.7%).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이나 불안요인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즉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만이 가지는 외형적 특징 등으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이전·신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하는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더욱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법무부 교정본부 및 각 교정시설에서도 영상공모전이나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욱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정시설 및 교정업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조타운화,²⁰⁾ 지역인재 채용,²¹⁾ 지역인구 유치²²⁾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시설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18) 김대중·김현정·김세진, 앞의 주15), 22면.

19)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154면.

20) 교정시설을 선호시설인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설립하는 법조타운화 방법이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써 분석되었다(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155면).

21) 경남도민일보(2023.2.12.), '거창구치소 교정직 10명 지역인력 채용',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372> (최종검색: 2023.7.24.).

22) 경남도민신문(2023.4.20.), '거창구치소 거창군 6만 인구 사수에 동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345> (최종검색: 2023.7.24.).

또한 교정시설이 안전시설로서의 인식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실제로 높은지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느끼기 쉬운 치안불안감 등에 대해서 배려하는 실증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 결과를 지역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정시설이 안전시설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²³⁾

III. 해외 사례를 통한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 해소 검토

1. 일본

1) 개관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이 대부분 당시의 도시 교외지역에 건설되었으나, 이후 도시발전상황에 따라 그 부지가 점차 도심지역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일찍이 1960년대부터 지역발전 및 도시계획에 따른 이전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당시에도 약 20여 개소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전요청이 있었다고 한다.²⁴⁾ 다만 일본에서는 교정시설별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신설 소요(所要)를 검토하였으나, 대부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를 선호하는 일본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이전·신설보다는 기준부지에서 증·개축하는 방법으로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진행하였다.²⁵⁾

이러한 증·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교정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교정시설의 건축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법무성 대신 관방 시설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본만의 특징이 나타났다.²⁶⁾ 예를 들어, 교정시설의 이전·신설 및 증·개축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일본 법무성 교정국 총무과와 대신 관방 시설과 그리고 각 지역의 교정시설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운영된다. 특히 시설과와 교정시설 간에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그

23) 손외철, 앞의 주5), 71면.

24)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1961年)『昭和36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2/nfm/n_2_2_3_8_1.html (최종검색: 2023.7.24.).

25)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1969年)『昭和44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10/nfm/n_10_2_2_2_1_1.html (최종검색: 2023.7.24.).

26) 배상균, (2020), '일본에서의 소년원 등 교정보호시설에 관한 공공갈등 대응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2호, 139-140면.

지역에 적합한 설계 및 건축이 이루어진다.²⁷⁾

이러한 시설과는 법무성의 시설정비 부서로서, 법무성이 관할하는 국유재산(토지 및 건물)의 관리, 시설의 신축·보수공사 등의 기획·설계·실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 법무성이 관할하는 시설은 구치소, 형무소, 검찰청 등 전국에 814개 시설이며, 교정건축(형무소, 구치소, 소년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일본 내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²⁸⁾ 특히 우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마찬가지로 일본 교정시설 중 일부는 근대역사의 중요문화재이거나 건축 분야에서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일본 교정시설 관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²⁹⁾

2) 일본에서의 교정시설 이전·신설 갈등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에 관하여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 자자체에서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교정시설의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을 피난 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점³⁰⁾과 우리보다 앞서 법조타운 형식으로 법원·검찰청·경찰서 등과 함께 교정시설이 건설되어 있어 시설 보안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증·개축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증·개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³¹⁾ 관련하여, 일본의 기타규슈 교정센터 건설계획 사례는 대표적인 교정시설 공공갈등 대응 실패사례라는 점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규슈 교정센터 건설계획 사례는 1995년 법무성과 후쿠오카 교정관구에서는 당시 계획으로 2001년에 폐청 예정인 오구라 형무소(小倉刑務所)의 소재에 조노 의료형무소(城野医療刑務所), 오구라 소년감별소(小倉少年鑑別所), 오구라 구치소(小倉拘置所)를 이전시키는 기타규슈 교정센터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³²⁾

문제는 법무성의 건설계획 발표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 법조회 등과 사전협의 없

27) 박은주·백진·한상우·이연미, (2018),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125면.

28) 法務省「施設課の仕事」https://www.moj.go.jp/shisetsu/shomu/shisetsu02_00017_01.html (최종검색: 2023.7.24.).

29) 法務省「大臣官房」<https://www.moj.go.jp/hisho/kouhou/kanbou5.html> (최종검색: 2023.7.24.).

30) 朝日新聞(2019.3.30.)「徳島」 德島刑務所의施設を避難所に市と協定」

<https://www.asahi.com/articles/ASM3Y3F4TM3YPUTB002.html> (최종검색: 2023.7.24.).

31) 배상균, 앞의 주26), 141면.

32) 福岡県弁護士会(2005.9.22.)「北九州矯正センター構想に反対し、少年鑑別所の適地への移転を求める声明」

http://www.fben.jp/suggest/archives/2005/09/post_57.html (최종검색: 2023.7.24.).

이 일방적으로 공표된 점과 세부 건설계획의 내용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역 법조회에서는 법무성이 각종 처우시설의 단지화에 따른 시설배치 합리화와 이전 및 증·개축 비용의 감소에 따른 재정효율화 등 경제적·행정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정시설인 형무소와 구치소, 보호시설인 소년감별소의 병설 및 통합 운영하는 문제점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였다.³³⁾

이러한 지역 법조회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동의를 계속해서 얻지 못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지역사회는 물론 교정시설 관계자와 수형자 등에게도 불편만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일본 법무성은 국가행정작용의 공공성과 공익성만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만을 요구하였기에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가 고착되었다.³⁴⁾

결국, 지역 법조회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후쿠오카 교정관구에서는 2009년 구치소의 이전을 단념하면서, 현재지에 증·개축(고층화)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2001년 오구라 형무소가 시설 노후화로 폐청(閉庁)되면서 이전한 조노 의료형무소를 기타큐슈 의료형무소(北九州医療刑務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 옆으로 오구라 소년감별지소를 이전시켜, 의료 및 감별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교정센터화로 마무리되었다.³⁵⁾

이처럼 일본에서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해 공공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 교정시설에서는 장기계획 하에 지역주민과의 민관협력체계를 성실히 구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교정시설 개방의 날 행사 및 전국 형무소작업 용품 전시판매회를 개최하면서,³⁶⁾ 지역상생 협력시설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³⁷⁾

3) 시사점

우선 일본에서도 교정시설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정시설이 자신의 거주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으며, 그러므로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교정시설 이전·신설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우리와 같다. 일본에서도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자연·실패사례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사례인 2017년 도쿄 아키시마 국제법무종합센터 이전·신설 사례의 경우에 최초 1970년대 후반부터 주일 미군 공군기지 부지의 반환에 따른 도심 국유지 활용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1998년 본격적인 국유지 이용계획수립 시부터 지역주민의 의사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³⁸⁾ 다만 일본 법무성에서는 자체 이전·신설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시설과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정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공청회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시설 설계 및 활용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일본 법무성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①교정시설이 비록 비선호시설이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이며 특히 수형자의 고령화 및 정신장애 수형자의 증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교정시설이 이전·신설되는 것이기에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점, ②해당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한 점, ③민관협동방식(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통한 시설 운용으로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바를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정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⁹⁾

이처럼 일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지는 않으나, 교정시설이 비선호 대상이 되는 원인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문제해결의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교정시설이 지역상생 시설로서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⁴⁰⁾은 참고가 된다.

33) 福岡県弁護士会(2005.9.22.)・前掲注32).

34) 福岡県弁護士会(2005.9.22.)・前掲注32).

35) 福岡県弁護士会(2005.9.22.)・前掲注32).

36) 法務省『各地の矯正施設情報』https://www.moj.go.jp/kyousei1/kyousei05_00033.html (최종검색: 2023.7.24.).

37) 毎日新聞(2018.6.4.)「刑務所を避難所に 熊本地震で協定倍増」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04/k00/00m/040/114000c> (최종검색: 2023.7.24.).

38) 배상균, 앞의 주26), 148-150면.

39) 上瀬由美子・高橋尚也・矢野恵美 (2017年) 「官民協働刑務所開設による社会的包摶促進の検討」心理学研究第87巻第6号586頁以下.

40) 只木誠 (2011年) 「刑事施設における官民協働」罪と罰第48巻第2号5頁以下参照.

2. 독일

1) 개관

독일의 경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기관(법무부 교정국)이 통일적으로 교정시설을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법무부에서 관할하기에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대응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독일에서도 최근 범죄 발생의 증가 경향과 교정시설 부족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 시설 노후화 및 도심지에 있는 교정시설의 교외지역 이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⁴¹⁾

2) 독일에서의 교정시설 이전·신설 갈등 대응

독일에서도 교정시설은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발로 이전·신설 부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①도시 또는 지역 이미지의 손상, ②환경 보전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③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 증가, ④인근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와 달리 독일의 경우 주 법무부에서 교정시설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어서 인근 주(州) 간의 교정시설 통폐합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교정시설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반대도 있었다.⁴²⁾

다만 독일에서는 연방제 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각 주 정부별 지방법원 소재지에 소규모 교정시설을 설치·운영해왔기에 지역주민 대부분이 교정시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편이기도 하고 소규모 교정시설이 대부분이라 이전·신설로 인한 공공갈등이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듯 교정시설이 선호시설은 아니며, 또한 독일에서도 지역주민의 님비(NIMBY)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독일에서도 시설 현대화 및 효율화를 위한 교정 시설 대형화를 진행하면서 과거보다 더 이전·신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³⁾ 따라서 독일에서도 교정시설의 이전·신설 대상지역의 선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에도, 주 정부 등 지자체에서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교정시설 이전·신설을 진행하거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이전·신설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기에 이에 관한 공공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사례가 많았다.⁴⁴⁾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과 공공갈등이 장기화 및 심각화된 경우를 살펴보면, ①모두 주 정부가 초기에 이전·신설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지역주민들에게 교정시설 이전·신설의 필요성과 해당 지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전·신설해야 하는 이유,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제공되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③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등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교정시설 이전·신설을 진행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⁴⁵⁾

3) 시사점

독일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이전·신설과 같은 사안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거창구치소 사례와 유사한 독일 사례로서, 로트바일시 교도소(JVA) 신축사례가 있다.

로트바일시 교도소(JVA) 신축사례의 경우, 초기에는 주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 및 확인하는 절차 등을 소홀히 한 탓에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면서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7년 4월의 신축 예정지 발표 이후 대안지역 검토 등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2010년부터 약 5년간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2015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로트바일시에 쉬 지역에 교정시설을 이전·신설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⁴⁶⁾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①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입장표명, ②감정적인 의견교환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보제공에 중점을 둔 토론·논의 절차 진행, ③법령,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공식적 의견수렴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 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 가능성을 증대, ④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의 최소화, ⑤의견수렴절차의 전문화 투명화(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설, 의견수렴 결과 공개 등) 등이 있었다.⁴⁷⁾

물론, 주민투표의 결과가 모든 문제 상황을 해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 정부 및 로드바일시의 노력이 신뢰관계를 회복하

44)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82-83면.

45)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83면.

46)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83면.

47)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84-86면.

41)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67-68면.

42)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82면.

43)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82면.

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지역주민이 결과에 승복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1. 법제도적 개선방안

1)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위한 부지 확정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큼에도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져 지역주민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부지가 확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제서야 지역주민이 신축내용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시설결정 기간 등의 과정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부지매입 비용도 증가하는 등의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⁴⁸⁾ 이처럼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자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공공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근거 법률이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점은 이제까지 공공갈등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도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관리 종합시책이 수립 및 시행(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21조의 연도별 갈등 관리 추진계획)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함으로 인해 규범력도 약하고 공공갈등

관리에도 효과적이지 못하였다.⁴⁹⁾

그렇기에 ①갈등관리 제도의 규범력 강화와 ②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수단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그간 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무관심 속에 각각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되었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번호 2106916). 본 법안의 핵심 사항으로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갈등관리기본법안」(의안번호 2106916)의 구조와 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참여 보장)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정보 공개 및 공유)
	제8조(갈등관리 종합시책)
제3장 갈등관리 종합시책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등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심의 결과의 반영)
	제12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제13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협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
	제15조(비밀 유지)

48)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91-92면.

49) 법무부, (2018), 2018년 법무연감, 47-48면.

구분	내용
제4장 공론화 대상 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제16조(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설치)
	제17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18조(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9조(선정위원회의 운영)
	제20조(선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선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2조(선정위원의 제척·회피)
	제23조(공론화 의제의 제안 등)
	제24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제25조(공론화위원회의 기능)
	제26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공론화위원회의 운영)
	제28조(여론조사)
	제29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공론화 결과의 발표)
	제31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제32조(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제33조(갈등관리 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5장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제34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제35조(포상)
	제36조(정보화시스템)
	제37조(재정지원 등)
	제38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별칙)

앞서 언급하였으나, 현행 갈등관리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행정 내부의 단순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규범력의 한계가 분명한 상태이고,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등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 등과 같이 기관장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나, 규범구속력이 부족하여 제도를 활용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일반법을 제정하여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법률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 보장’ 등 중앙행정기관이 갈등 예방·해결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2)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다른 한편으로, 2021년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3)로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입법 취지는 교정시설이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십 년째 신축이 지연되거나 준공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교정시설 이전·신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이전·신축부지 및 그 주변 지역과 종전 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과밀수용 문제 해소 및 원활한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할 수 있으며,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783)의 구조와 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성부지의 선정	제4조(조성후보지의 선정)
	제5조(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
	제6조(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제7조(조성부지의 선정)
제3장 조성사업의 방식 및 지원	제8조(조성사업의 방식 등)
	제9조(부담금의 면제)
제4장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	제10조(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3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4조(토지수용)
	제15조(부담금의 감경)
제5장 조성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6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등)
	제18조(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6장 교정시설 조성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19조(교정시설 조성사업 지원위원회)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제20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제21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제8장 보칙	제22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본 법률안은 교정시설이 비선호시설이라는 점과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시민의 생활환경에서 너무 멀어질 수 없다는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방안을 확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⁵⁰⁾ 또한 이를 통해 정부의 책임하에 교정시설의 확충

50) 대한뉴스(2021.8.2.), '교정시설 이전 시, 국가가 지원한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823> (최종검색: 2023.7.24.)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법률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정시설 조성 절차와 함께 관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안 제10조 제2항),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정시설의 이전 또는 신축에 따른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4장, 제5장, 제6장),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도를 제고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법률안의 대상인 '교정시설'을 제2조(정의)에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도 같은 비선호시설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제5조(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선정위원 중 위촉위원 기준이 '조정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격요건이 행정 편의적이고 불명확하여 부지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⁵¹⁾

마지막으로 농지법, 지방자치법 등과의 법령 충돌 문제나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과의 중첩 문제 등은 법률안 검토과정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정보공개 확대 등 절차 투명성 확보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사업은 그간 ①정책 결정, ②발표, ③방어의 순서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⁵²⁾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와 같이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공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전·신설된 강원북부교도소(속초교도소)의 경우에도 당시 지역주민의 불만은 속초시로부터 주민 의견 수렴작업이 전혀 없어 교도소 설치가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51) 대한변호사협회(2021.11.22.),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111783호)에 대한 검토의견', 4-5면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page=12&seq=11723&types=7&category=&archtype=&searchstr=\(최종검색: 2023.7.24.\)](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page=12&seq=11723&types=7&category=&archtype=&searchstr=(최종검색: 2023.7.24.)).

52) 유병철, 앞의 주7), 95면.

었다.⁵³⁾

따라서 공공갈등의 주된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위해 교정시설의 이전·신축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신뢰에 기반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주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교정시설 이전·신설 관련 정보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은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고(57.3%), 다음으로 TV, 신문 등 언론매체(30.6%), ‘주민센터나 노인회관을 통한 공고문’ 방식(22.9%) 등의 순서였다.⁵⁴⁾

특히 공공갈등은 안양교도소 사례처럼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갈등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2018년 주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교정시설 입지 결정 방식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정부가 결정’하는 방안(63.3%)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안(20.4%)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결정’하는 방안(16.3%)의 선호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사전적 갈등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⁵⁾ 그리고 그 전제조건은 바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과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 형성이라 할 수 있다.

2)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2018년 주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교정시설이 위험하며 개인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에 교정시설 관련업무 종사자가 있거나,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인정되고 있다.⁵⁷⁾

53) 서울신문(2011.8.3.), ‘속초 교도소 건립 싸고 市 - 주민 갈등 고조’,

<https://go.seoul.co.kr/newsView.php?id=20110803015009> (최종검색: 2023.7.24.).

54)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153-154면.

55)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149-15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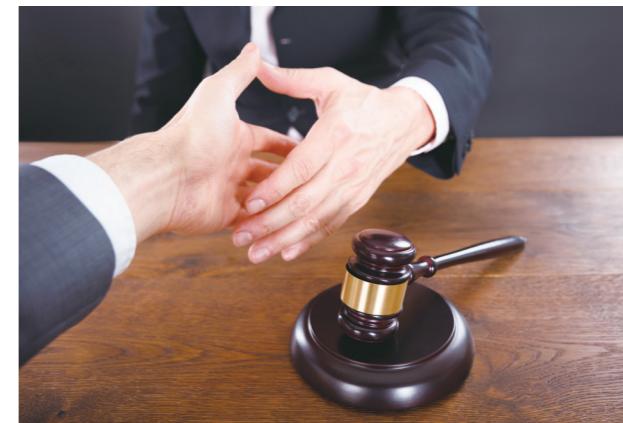
56) 김민영·배상균·박경규, 앞의 주3), 171면.

57) 上瀬由美子 (2017 年) 「官民協働 (PFI) 刑務所に関する知識獲得と刑務所に対する態度の変容—出所者の社会的包摶に有効な情報とは何か—」立正大学心理学研究所紀要第15号51-56頁。

따라서 교정시설의 이전·신설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하는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법무부 교정본부 및 각 교정시설에서도 영상공모전이나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욱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정시설 및 교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야 한다.⁵⁸⁾ 교정시설의 본래적 의미나 수령자 재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대회 개최 및 언론홍보, 직원용 문화체육시설의 주민개방이나 주차장 지역주민 무료개방,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구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상생·공헌시설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을 안전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안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의 일반 업무 및 필요성에 대한 주민교육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와 연계한 주기적인 주민인식조사, CCTV 등 안정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정시설 주변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정시설을 안전시설이자 지역상생·공헌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제시된 운영상의 개선방안은 다소 포괄적이며, 해외 사례를 포함하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부족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계기가 되는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58) 이러한 방식의 효과성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일반 교도가 아닌 PFI교도소이기는 하지만, 설치 후에 지역주민의 저항감이 낮아진 사례가 조사연구를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다(上瀬由美子·高橋尚也·矢野恵美·前掲注39) 587頁).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김대중/김현정/김세진, (2021). 한국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본 조정, 참여형 갈등관리, 예방적 접근의 활용과 해외시스템 연구, 집문당
- 김민영/배상균/박경규, (2018).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AA-09
- 박은주/백진/한상우/이연미, (2018).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 배상균, (2020). '일본에서의 소년원 등 교정보호시설에 관한 공공갈등 대응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2호
- 법무부 교정본부, (2010). 대한민국 교정사 (1)
- 법무부, (2018). 2018년 법무연감
- 손외철, (2015).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보호관찰 제15권 제2호
- 송영삼, (2016).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 유병철, (2016).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 유재봉/주상현, (2016). '공공갈등 발생요인과 갈등관리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 윤종설/서정철, (2017). '공공갈등 영향분석제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7-25

[국외 문헌]

- 上瀬由美子. 高橋尚也. & 矢野恵美. (2017)「官民協働刑務所開設による社会的包摶促進の検討」心理学研究第87巻第6号
- 上瀬由美子. (2017)「官民協働 (PFI) 刑務所に関する知識獲得と刑務所に対する態度の変容—出所者の社会的包摶に有効な情報とは何か—」立正大学心理学研究所紀要第15号
- 只木誠. (2011)「刑事施設における官民協働」罪と罰第48巻第2号

[기타 자료]

-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 (1961)『昭和36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2/nfm/n_2_2_2_3_8_1.html (최종검색: 2023.7.24.)
-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 (1969)『昭和44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10/nfm/n_10_2_2_2_1_1.html (최종검색: 2023.7.24.)

• 法務省.『各地の矯正施設情報』

- https://www.moj.go.jp/kyousei1/kyousei05_00033.html (최종검색: 2023.7.24.)
- 法務省.『大臣官房』<https://www.moj.go.jp/hisho/kouhou/kanbou5.html> (최종검색: 2023.7.24.)
- 法務省.『施設課の仕事』
https://www.moj.go.jp/shisetsu/shomu/shisetsu02_00017_01.html (최종검색: 2023.7.24.)
- 경남도민신문(2023.4.20), '거창구치소 거창군 6만 인구 사수에 동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345> (최종검색: 2023.7.24.)
- 경남도민일보(2023.2.12), '거창구치소 교정직 10명 지역인력 채용',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372> (최종검색: 2023.7.24.)
- 대한뉴스(2021.8.2), '교정시설 이전 시, 국가가 지원한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823> (최종검색: 2023.7.24.)
- 대한변호사협회(2021.11.22),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현의원 대표발의, 2111783호)에 대한 검토의견',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page=12&seq=11723&types=7&category=&searchtype=&searchstr=> (최종검색: 2023.7.24.)
- 서울신문(2011.8.3), '속초 교도소 건립 싸고 市 - 주민 갈등 고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03015009> (최종검색: 2023.7.24.)
- 쿠키뉴스(2023.01.26), '붕괴 위험 안양교도소, '안전'이 최대 화두로 등장',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260118> (최종검색: 2023.7.24.)
- TV조선(2023.02.12), '주민투표로 갈등 봉합…거창구치소 완공',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13/2023021390044.html (최종검색: 2023.7.24.)
- YTN(2019.03.28),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재점화'…야탑동 주민반발 확산',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8153200061> (최종검색: 2023.7.24.)
- YTN(2021.09.11), '법무부, 교도소·구치소 13곳 신축·이전...과밀수용 해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11135073221 (최종검색: 2023.7.24.)
- 朝日新聞(2019.3.30)「徳島」徳島刑務所の施設を避難所に市と協定」<https://www.asahi.com/articles/ASM3Y3F4TM3YPUTB002.html> (최종검색: 2023.7.24.)
- 毎日新聞(2018.6.4)「刑務所を避難所に 熊本地震で協定倍増」<https://mainichi.jp/articles/20180604/k00/00m/040/114000c> (최종검색: 2023.7.24.)
- 福岡県弁護士会(2005.9.22)「北九州矯正センター構想に反対し、少年鑑別所の適地への移転を求める声明」http://www.fben.jp/suggest/archives/2005/09/post_57.html (최종검색: 2023.7.24.)

교정행정 가치와 방향성에 관한 소고



최우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치료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순풍을 맞고 있는 교정행정

최근 교정행정에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의 교정행정이 범죄자의 격리에 초점을 맞춘 보안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치료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범죄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다. 하나는 주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죄지은 사람, 다른 하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무의식적 피해자이다. 그동안은 전자의 행위와 처벌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하여 범죄성을 줄이려는 후자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강조하는 치료 정책도 바로 그것이다. 교도소는 범죄자를 사회위험으로부터 격리하고 나아가 그들의 범죄성을 줄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책무가 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고민을 담고 있다. 이에 앞으로 교정행정의 방향은 범죄자에게 단죄를 통해 속죄할 시간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선량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 정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주는 용기 있는 국민의 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힘쓰고 있는 ‘심리치료과’ 확대도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범죄자를 향한 포용 정책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시작부터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첫 번째가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이다. 국민은 범죄자에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다. 교도관(矯導官)의 명칭에 비유되듯 ‘바로잡아서 이끄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범죄 행위를 포용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국민의 감정까지 더하면 불편한 감정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교도관이 그들을 미운 감정으로 대하면 그들 역시 불편한 감정을 되돌려주기에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 시작부터가 어려운 정책인 셈이다. 다행히 최근 연구에서 ‘치료 정책이 재범 가능성률 낮춘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통해 더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중심에 교도관들의 위대한 혼신과 노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을 운영하기보다 개선 가능한 대상자를 엄선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치료과정이 옳은 방향이다. 내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가 어려운 대상자들은 외부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준비 없이 출소한 범죄자들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교정정책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뿐이다.



교도소가 인생의 환승역이 될 수 있도록 따스한 경험이 필요

다년간 상담 경험으로 느낀 점이지만,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여 범죄로 진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적지 않은 수가 불우한 환경의 영향으로 세상을 비뚤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범죄행위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면 멀지 않는 곳에 분노와 적개심을 살필 수 있다. 몸은 성장했으나 내면은 성인 아이의 특성을 보인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사람,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에 굽주린 사람, 가정폭력 등으로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 거절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 등 욕구가 제때 충족되지 않아 어린 시절 상처를 성인이 되어서도 품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상처가 곪아 여유를 부리기 어려운 그들이 자신의 뜻을 요구하기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온정을 먼저 나누고, 그러한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은 일시적인 반성만을 이끌 뿐이다. 가해자를 응호하는 말로 들릴 수 있으나 결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행복함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나눠주는 방법을 잘 안다. 비뚤어지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새롭게 열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따뜻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솝우화에 ‘해와 바람이야기’가 있다. 결국 바람의 강압적인 힘은, 노인의 코트를 벗기지 못했으나 해의 따뜻함은 노인의 코트를 벗겨 냈다. 강한 힘보다 따뜻한 손길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새겨야 한다. 앞으로 교정의 역할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에서 벗어나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을 안겨 줄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반성과 뉘우침을 이끌 수 있다면 교도소는 그들 인생의 환승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정의 심리치료, 교정행정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립해야

교정행정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정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상담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2016년 9월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였고, 교도소마다 심리치료센터 및 심리치료팀을 두고 있다. 최근 2019년 10월에는 일선 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던 심리치료팀을 일부 심리치료과로 승격하였고, 계속해서 ‘과’승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보안영역과 치료영역을 함께 담당했던 것을 점차 분리하여 교정교화의 한 축으로 심리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교정 서비스가 보안영역의 수용관리에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재범 예방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치료영역이 크게 부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정 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이며 선진 교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얻어야만 정책이 안착할 수 있다. 작금의 교정행정의 방향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더는 피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혜택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찰의 범죄 수사와 범인 체포, 소방의 화재진압처럼 교정의 심리치료 역시 교정행정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에 심리치료라는 말에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어디 의사들 뿐이랴?”라고 반문하고 싶다. 심리치료는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탐색하여 희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교도관이야말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사이며, 개인을 넘어 사회까지 밝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를 비뚤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을 올바르게 이끄는 일을 교도관 아니면 누가 나서겠는가? 범죄자들을 읊지 환경에서 양지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삶의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조력해줄 수 있는 사람, 궁극적으로 피해자 없는 사회를 위한 디딤돌 역할은 오롯이 교도관의 몫이다. 읊지에서 남몰래 헌신하는 교도관, 우리 교정공무원들의 사명감으로 우리 사회는 밝게 빛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권리 남용 및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14두9349,
대법원 2022두52980 판결을 중심으로



박규연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I. 들어가며

II.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III.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의미

IV.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최신 판례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V. 결론

I. 들어가며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知情權)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즉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민의 한 사람인 수용자 역시 교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국 교정기관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8,595건(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73.6%), 2021년 80,640건(65.1%), 2022년 84,503건(59.7%)으로 건수 자체만 보더라도 매우 많은 수치에 해당할 뿐더러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교정행정 마비와 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의 과중한 업무 현실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내용 역시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강제노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그리고 판결의 의의를 살펴본 후, 이와 더불어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의2, 제22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조 제1항의 5」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의 진술 내용만을 가리키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요지(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제1심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므로(같은 호 다목),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근거로 1심은 공개의 필요성이 비공개의 필요성보다 더 커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

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외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제보하여 원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점, ③원고가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점, ④소외인의 진술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하여 이미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에 관한 진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소외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거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외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범죄혐의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영상시스템에 있는 마약전과자들의 사진, 소외인의 서명·무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범죄혐의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영상시스템에 있는 마약전과자들의 사진, 소외인의 서명·무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3. 제2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공개되면 수사 방법이 노출되거나 소외인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청의 업무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 신문조서로서 위와 같은 의견서 등과는 그 성격이 달라 수사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판결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되면 수사방법이 노출되거나 소외인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청의 업무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정보는 피

의자신문조서로서 위와 같은 의견서 등과는 그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수사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소외인이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달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정보공개청구의 권리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의 원심을 포함한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제출하는 등의 변론행위를 한 바 없다.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 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자신이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권리구제

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III.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의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 소송 관련 현황

원고가 제기한 다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대구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652 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 2007. 1. 1부터 2014. 1. 21.까지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검찰청검사장, 지검장, 구치소장, 경찰서장,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155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제기된 정보공개청구 소송 총 1,304건 중 약 11.8%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8.까지의 사이에 강릉교도소장 외 18개 교정기관장(공주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성동구치소장, 울산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 강릉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천안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해남교도소장)을 상대로 ‘2012년도 위 각 교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료수령을 거부하여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수형기간 중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변론을 위해 2021. 5. 6.부터 2014. 5.경 까지 약 90회에 걸쳐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정비용 중 6,211,956원(통상 수용자의 법정출정 시 2~4명의 직원이 계호하는데, 그 계호직원의 출장여비를 수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차량이용비용만을 청구하며, 판내 출장 시에는 출장비용을 징수하지 않음)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정비용과 상계될 것을 우려하여 영치금 계좌로 일체의 돈이 입금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 10.경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왔는데, 전체 115건 중 96건에서 변호사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B는 2011.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2013. 1.경 및 2013. 2.경 단 3차례 원고를 접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수기로 소송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이 승소한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 서기료, 제출비용, 출석비용, 자비부담 출정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였고, 일부출정비용(운임)을 전보받았다.

바. 대전교도소 교감 ○○○은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수형생활 중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을 하며 마치 전국 투어를 하듯이 다니는 이유와 체납된 소송비용(출정비용)을 내지 않고 영치금이 차입되지 않도록 한 이유 및 출소일까지 소송만을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원고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서신불허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다 보니 돈벌이가 되며, 행정소송은 10건 중 최소 5건 이상 승소하고, 소송비용(변호사비)은 건당 약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변호사 100만 원, 자신 50만 원 정도로 배분키로 하여 건수가 많을수록 재미있고, 또한 소송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좋으며, 현재 체납된 금액은 수입이 되는대로 변제할 것이고, 대전에서는 작업장에 출력하여 열심히 작업하고 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거실 문제로 조사징벌을 받았으니 조그마한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소송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위 교감 ○○○은 원고에게 ‘지금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남은 형기 동안 작업장에 출력하여 생활할 것’을 권유하자, 원고는 2014. 2. 12. ‘자신이 그동안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동시에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복귀에 매진할 것이고, 기왕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선임된 변호인이 마무리하도록 하되, 자신은 더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원고가 2014. 2. 7.자로 작성한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의의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은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 1.부터 2014. 1. 21.까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소송만 155건에 이르렀으며, 또한 전국 18개 교정기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료 수령을 거부하여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 또한 원고는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경위를 보았을 때, 원고는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 충족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기보다는, 승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강제노역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따른 원고의 알 권리 충족 등 사익보다는 정보공개에 따른 행정기관의 부담과 이에 따라 한정된 행정기관의 자원이 다른 국민들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어 공익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크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권리구

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피하거나 국가기간의 행정력을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이 밝혀진 바 있음에도 수형자인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한편, 과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과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에서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8가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폭넓게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 8가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로 심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런 판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권리남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이 공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IV.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최신 판례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1.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처분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 22.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7. 26.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위 사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시점인 2019. 7. 26.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인 2019. 5. 2.부터 90일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인 2019. 4. 22.부터는 90일을 도과한 사안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날’인지 아니면 ‘비공개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다.

2. 소송 경과

가.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6. 20. 선고 2019구합74096 판결)

제1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각하 등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결정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90일 이내인 2019.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이에 대하여 제2심은, 이 사건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 4. 22.부터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2019. 7. 26.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 90일의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

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

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 2019. 5. 2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2019.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V. 결론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의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 충족 및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위 정보를 활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은 사례가 상당한데,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도 담당 교도관들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 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이로써 교정시설에 상당한 업무 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처리기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사료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2014두9349 판결>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을 정보공개청구 거부사유로서 공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을 사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고려해보면, 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무차별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를 혼란화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보공개법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시 목적 규정을 신설하거나 청구권 남용을 사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노르웨이 수용자 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탐색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들어가며

II. 노르웨이 교정조직

III. 노르웨이 수용자 교육의 근거법

IV.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특징

V.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시사점

VI. 나아가며

이 연구¹⁾는 노르웨이의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특징과 그 시사점을 탐색한 것이다.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르웨이는 형집행법 및 교육법 등에 수용자의 교육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노르웨이는 정상성원칙과 수입모델원칙에 따라 인근 고등학교의 교사가 개별 교도소에 개설된 일명 교도소 학교에서 일반 학교와 동일한 조종고 교과과정을 가르치며, 예산 등은 모두 국가(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셋째, 노르웨이는 수용자의 보안등급별 배치전환 과정을 거치며 교도소 교육과정도 상호 연계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수용자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노르웨이는 형집행법 및 교육법 등에 수용자 교육관련 국제인권규범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특히 외국인 수용자에게도 차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다섯째, 노르웨이는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복귀보증제를 시행하며, 이는 수용자의 재범률을 억제하고, 재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노르웨이 교도소, 노르웨이 교정교육, 수용자교육, 교도소학교, 교정교육

I. 들어가며

노르웨이 형집행법에서 교정처우의 목적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재활(Rehabilitation)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gulations relating to the Execution of Sentences, Sec. 1-2). 즉 노르웨이는 교도소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뿐 그 외의 기본권은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상성원칙(Normality Principle)을 수용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Tønseth, Bergsland, & Hui, 2019). 이 정상성원칙은 모든 교도소의 처벌 외의 서비스는 교도관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나 기관이 담당도록 하는 이른바 수입모델원칙(Import Model Principle)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의 교도소 수용자교육은 이 정상성원칙과 수입모델원칙을 반영하여 운영되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용자 재범률을 보임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FirstStepAlliance, 2022). 따라서 이 연구는 노르웨이의 수용자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수용자 교육정책의 개선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1) 이 논문은 허경미. (2020).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시사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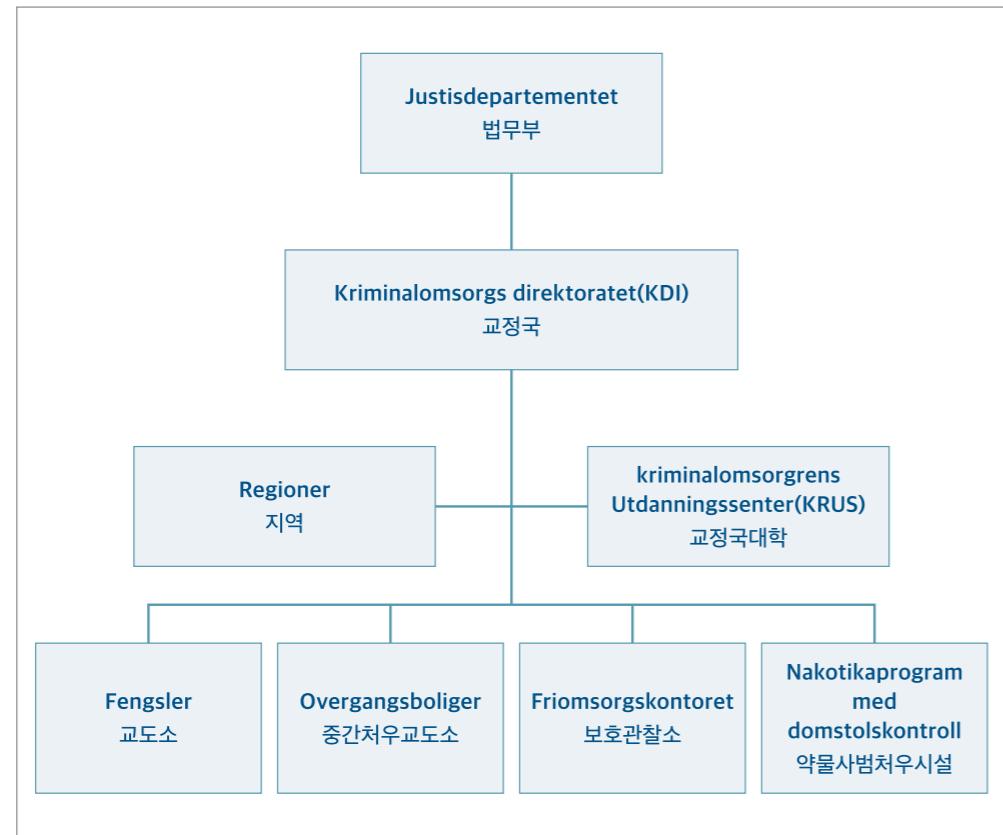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5), 295-324.를 2023년 9월 현재의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II. 노르웨이 교정조직

1. 노르웨이 교정국

노르웨이 교정국(Norwegian Directorate of Correctional Services, Kriminalomsorgsdepartementet: KDI)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²⁾ 법무부 장관 산하의 감독위원회(Supervisory Council)가 교정국을 직접 지휘·감독 한다(Execution of Sentences Act, sec. 9.).³⁾

<그림 1> 노르웨이 교정국 조직체계



자료: Government.no, <https://www.regjeringen.no/en/dep/jd/organisation/id487/> 2023. 9. 5. 검색.

2) 노르웨이 법무부 산하에 교정국, 경찰국, 이민국 등이 소속되어 있다.

Government.no, <https://www.regjeringen.no/en/dep/jd/id463/> 2023. 9. 5. 검색.

3) 법무부장관은 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위원은 수용자의 진정 등을 조사하며, 수용자에 대한 직접 면담권 및 동의시 개인정보 등의 열람권이 있다(Execution of Sentences Act, sec. 2-3.).

교정국은 정책기획 및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본부(Kriminalomsorgs Direktoratet), 5개의 지역교정서비스(Regioner)가 있고 그 산하에 교도소(Fengsler) 및 보호관찰소(Friomsorgskontoret), 중간처우교도소 등 58개소로 구성된다.⁴⁾ 그 부속기관으로 교도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노르웨이 교정국대학(Kriminalomsorgens Utdanningssenter: KRUS)⁵⁾과 교정시설의 정보기술시스템의 개발, 운영을 담당하는 교정정보통신서비스(The Correctional IT services: KITT)가 있다. 노르웨이 전역에 모두 17개소의 보호관찰사무소가 있다.

노르웨이 교정국에는 약 3,600여 명의 교도관 및 300여 명의 보호관찰관이 비무장으로 근무한다. 교도관은 신규채용 후 약 2년간 교정국대학에서 심리학, 범죄학, 법률, 인권 및 윤리와 같은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교육기간 중 급여는 모두 지급된다. 노르웨이의 각 교도소에는 교도관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관리관이 배치된다(EPTA, 2019).

2.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57개소의 교정시설의 수용자 현원은 2,988명으로 전체 수용가능 인원 3,657명의 81.7%이다. 인구 10만 명당 수용인구는 54명이다. 수용자 중 여성은 5.6%, 18세 이하 청소년은 0.3%, 외국인은 26.4%로 나타났다(World Prison Brief, 2023).

노르웨이 교도소는 보안(Security) 수준에 따라 중보안교도소, 경보안교도소, 중간처우교도소로 분류된다(Section 10). 각 교도소는 평균 70개 정도의 거실(Cell)을 구비하고 있으며, 가장 큰 교도소는 400개 정도의 수용 거실을, 가장 작은 교도소는 15개 정도의 수용 거실을 갖췄다. 노르웨이는 미결수 교정시설은 없고, 모두 교도소에 구금한다. 중보안교도소는 폐쇄형 교도소로 전국 교도소 중 70%가 이에 해당한다. 중보안교도소 주변은 담벽이나 높은 울타리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수용자의 작업, 교육, 여가활동은 모두 교도관 통제하에 이루어지며, 그 외는 수용 거실에서 생활한다. 경보안교도소는 개방형 교도소로 중보안교도소 보다 물리적 보안 조치가 적다. 교도소 건물은 잠겨 있지만, 수용자는 다른 사람의 수용 거실을 방문할 수 있고, 공유할 수도 있다. 전화 사용이나 우편물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교도소의 다양한 자유공간

4) kriminalomsorgen.no, <https://www.kriminalomsorgen.no/organisering-av-kriminalomsorgen.583043.no.html/> 2023. 9. 5. 검색.

5) 교도관 교육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등으로 운영되며, 전문과정은 2년 석사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유급으로, 교육비는 무상이다. 교도관은 학업만을 혹은 업무와 병행한다. Kriminalomsorgens høgskole og utdanningscenter, <https://www.krus.no/studier.511853.no.html/> 2023. 9. 5. 검색.

및 상호방문 허용, 외부면회 조건의 완화 등 유연한 통제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자연스럽게 사회복귀와 적응이 되도록 한다.

중간처우시설도 교도소이며, 중보안교정시설이나 경보안교도소에서 구금 후 이송되는 경우나 최대 1년 미만의 구금형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중간 처우시설의 통제시스템 수준은 경보안교도소 보다 적다. 중간처우시설은 사회복귀의 일부로 주거, 직업, 사회훈련 등의 전문적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1> 노르웨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및 인구 10만 명당 추세

연도	수용인원	인구 10만 명당 수용인구
2002	2,832	62
2004	3,028	66
2006	3,250	70
2008	3,387	71
2010	3,624	74
2012	3,591	72
2014	3,717	72
2016	3,850	73
2018	3,425	65
2020	3,207	60
2023	2,988	54

자료: World Prison Brief, 2023.

보호관찰서비스는 2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보안교도소에 수용 후 잔여 형기 1년 미만으로 석방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경보안교도소로의 이전심사를 거쳐 사회복귀에 대비한 훈련을 지원한다.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직접 경보안교도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별심사를 거쳐 배치여부를 결정한다.

III. 노르웨이 수용자 교육의 근거법

1. 노르웨이 형집행법

노르웨이 형집행법(Execution of Sentences Act)은 “형집행법의 목적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집행과 처우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며,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성행교정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은 모두 8개 장(Chapter), 83개 조문(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규정의 범위와 형집행에 관한 일반원칙(1-1-1-4조), 제2장은 행정 규정(2-1-2-3), 제3장은 구금형 집행 및 특별 형사제재(3-1-3-45), 제4장은 법령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구금 및 기타제재 (4-1-4-4), 제5장은 사회 내 처우(5-1-5-4), 제6장은 중보안교도소의 수용 및 처우(6-1-6-14), 제7장은 전자감독제(7-1-7-9), 제8장은 기타 조항(8-1-8-2) 등이다.

2. 노르웨이 행정법

노르웨이 행정법(Norwegian Public Administration Act)은 “정부는 주민의 초중등교육, 의료, 노인복지, 실업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도로교통, 경제개발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지역주민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모두 11개 장(Chapter), 52개 조문(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Norwegian Maritime Authority, 2018). 행정기관은 당사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특정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법규, 절차,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서비스 의무를 부담한다(Sec. 11). 따라서 정부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초중등 교육권 및 직업훈련 교육권 등을 행사하도록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교도소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정보 및 절차, 해당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지도와 상담에는 노르웨이 노동 및 복지행정의 사회서비스법(Act on Social Services in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NAV), 노동시장법(Labour Market Act) 및 노동시장 조치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Santora, Espnes, & Lillefjell, 2014).

3. 노르웨이 교육법

노르웨이 교육법(Norwegian Education Act)은 노르웨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의무 교육과 권리, 교육과정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모두 16개 장(Chapter), 136개 조문(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진 의무교육 대상자 아동의 연령을 6~16세로, 그리고 의무교학 대상자 청소년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Byholt, Bakke, & Ianke, 2017).

노르웨이 교육법 제2-1조는 “노르웨이의 모든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이 노르웨이 시민 또는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아동의 노르웨이에 불법적 혹은 합법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제3-1조는 초등 및 중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이수한 사람은 3년 동안 풀타임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24세가 되는 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다. 제4A-1조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이수하지 않은 16세 이상의 사람들도 초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자 연령 이상인 사람의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권리는 노르웨이인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외국인일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18세 이상 외국인일 경우에는 노르웨이에 3개월 이상 머물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3-2a조는 지방정부(County Authority)는 해당 관할지역의 교도소 수용자들의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노르웨이 교정국은 필요한 교육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IV.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특징

1. 교도소 수용자 교육 이념

최초의 노르웨이 교도소는 1630년경 트론헤임에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수용자 읽기 교육을 실시하였다(Langelid, Torfinn, et al., 2009). 1735년에서 1789년 사이 노르웨이에 지어진 4개의 교도소에서도 교육과 교화의 기능이 동일시되었다. 1842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구금모델(Philadelphia Solitary Confinement Model)’, 즉 수용자에게 독방을 배정하고, 노역, 질서정연한 생활방식, 종교, 윤리교육 및 기초교육 등을 훈련시키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교정처우 방식이 도입되었다. 1851년에 이 ‘필라델피아 모델’을 구

현하는 교도소를 설립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초중등교육을 미이수한 모든 남성 수용자는 교도소 내 초중등교육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였다. 1903년 교도소 법(1903 Prison Act)은 18세 미만 수용자에 대한 의무적 교정교육을 명시했다.

1958년에 신교도소법(1958 New Prison Act)은 교도소 교육을 더욱 강조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교육문화부와 법무부는 교도소의 직업훈련을 강화토록 하는 협약을 맺었고, 시간제 전담교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부터는 교육당국(Ministry of Educational, Cultural and Church Affairs)이 교도소 의무교육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즉 취학연령의 소년범 및 부적절한 교육배경을 가진 청소년 범죄자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1970년에 범죄학자 Christie는 “교도소 조직의 모델로 교도소교육을 모두 외부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른바 수입모델원칙(Import Model Principle)을 제안하였다 (Christie, 1970). 이 수입모델원칙은 1997~1998년의 교도소 및 보호관찰서비스에 관한 노르웨이 의회보고서에 반영되어 모든 교도소의 처벌외의 서비스, 즉 의료, 교육, 도서관, 복지 등을 교도관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나 기관이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1988년부터 교도소 내 모든 교육 및 수용자 출소 후 교육비용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형집행법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교정국은 중앙행정부와 6개의 지역관할로 분할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자 교육은 지역관할(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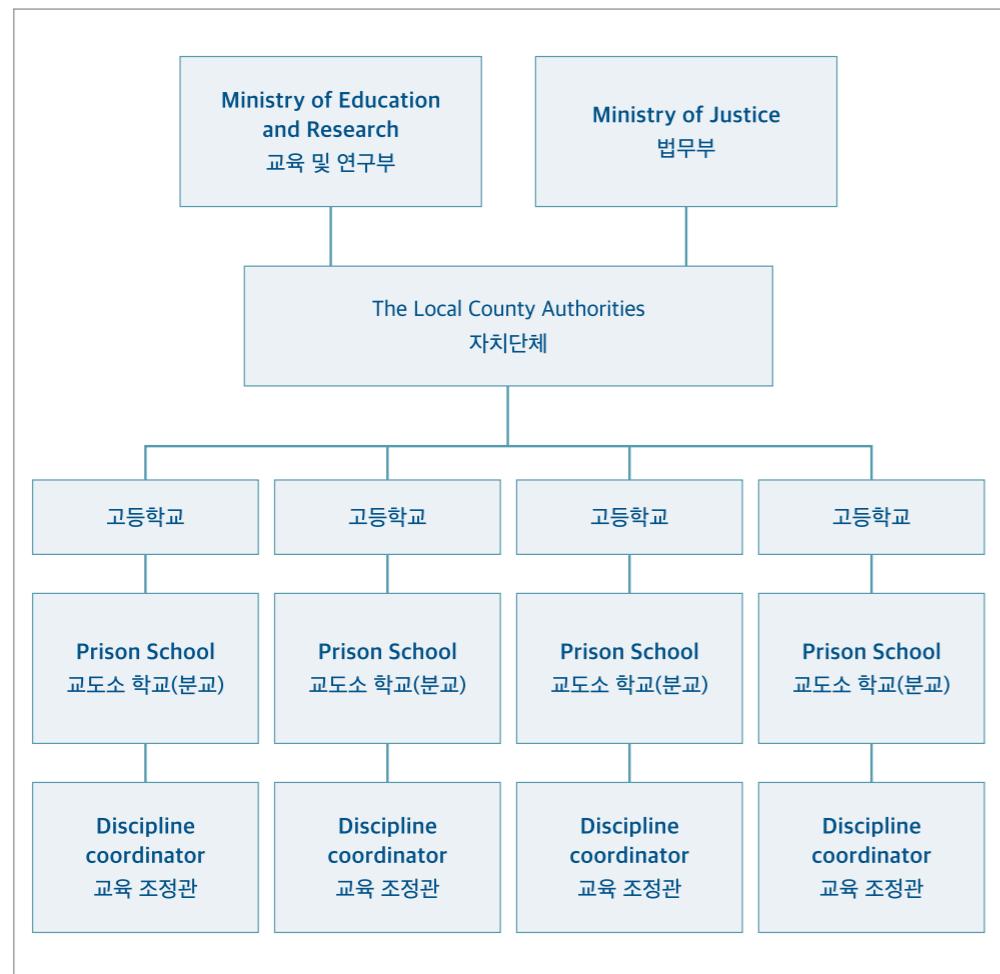
또한 노르웨이 의회는 1998년에 교도소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오슬로대학교 등 3개의 대학으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의뢰하였고, 2004년도에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Lunde, 2004). 평가단은 ‘교도소 내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직업훈련 확대, 실용과목 확대, 다양한 교과과정,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교육확대, 교육당국과 교정당국 간 협력체계 공고화, 출소 후 교육 모니터링 지속화, 여성 및 외국인 수용자 교육기회 확대, 중앙정부의 책임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2008년 교육법에 반영되었고(Langelid, Torfinn, et al., 2009: 95-97), 2022년 현재까지 기본 틀로 이어지고 있다(Breivik, 2022).

2. 지방정부: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책임 주체

노르웨이는 전국에 19개의 자치단체(County)가 있고 이 자치단체, 즉 지방정부(County Municipalities)가 교육책임의 주체로서 교정교육의 책임을 부담한다. 즉 지방정부는 노르웨이 교정국의 국가적인 책임(National Responsibility)을 지며,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Byholt, Bakke, Ianke, 2017: 11).

수용자의 개별 교육 및 진로지도에 대한 책임은 교도소 근처 고등학교가 부담하며, 교도소 학교(The Prison School)는 해당 고등학교의 분교(Branch)로 간주된다. 교사와 카운슬러는 지역고등학교 소속이다. 자치단체는 각 교도소에 교육조정관(Discipline Coordinator)을 임명하며, 교육조정관은 교도소 교육훈련 및 수용자의 교육관련 상담, 다른 교도소 학교와 고등학교와의 연계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각 고등학교 교장은 이 교육조정관을 통하여 교도소 교육 관련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림 2> 노르웨이 교도소의 수용자 교육 체계도



자료: Breivik, 2022, 재구성.

3. 교도소 학교의 교육과정

노르웨이 교도소 교육은 원칙적으로 형집행법 및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성(Normality) 및 수입모델(Import Model)의 취지를 반영한다(Breivik, 2020). 교도소 내 모든 비형사적 기능(Non-penal Functions)은 교도소 외부(지역사회)에 의하여 작동되며, 외부(지역사회)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수용자의 재활(Rehabilitation)을 돋는 것이다. 교도소 교육은 인근 고등학교 교사들이 초중고교 교과목(General Subjects) 및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을 담당한다(Breivik, 2022). 교도소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노르웨이 교도소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비중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과정	1.2%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과정 및 직업훈련 (음악, 무용 및 드라마, 건축, 건설, 레스토랑 및 식품가공, 기술 및 생산 등의 전문화 프로그램)	50%
단기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과정	30%
일반 및 직업교육	일반(예술교육, 음악, 연극 등의 여가생활 단기과정), ICT, 예술 및 공예 등	13%
종합대학/전문대학 과정	각 분야별	5%

자료: Breivik, 2022.

노르웨이 교도소 학교에는 매일 1,400여 명의 학생이 출석하며, 인근 고등학교에 소속된 담당교사 약 440명에 의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교사는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신분을 가진다. 수용자 100명당 7~8명의 교사에 의하여 운영된다. 교도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교도소 밖으로 수용자는 외출이 허용되며, 필요한 식비 및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Breivik, 2020). 직업훈련교육을 받는 수용자는 일반 기업체의 시보로 임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급여를 업체로부터 지급받는다.

한편, 노르웨이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출소 이후에도 수용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을 보증하는 이른바 복귀보증제(Return Guarantee)를 시행한다(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2018). 복귀보증제의 주요 내용은 주택, 교육, 취업대비 자격증

취득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약물치료프로그램을 포함한 건강서비스, 재정자문서비스 및 부채정리상담 또는 부채회수, 출소일 등이다.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며, 수용자가 직접 해당시설 등에 전화연락, 입학서 제출, 의견교환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교도소 수용자 교육효과

옥스퍼드대학의 Yukhnenko 교수 등이 각국의 수용자 출소 후 재범률을 측정하는 연도의 차이와 공식적인 발표 등의 상이성을 고려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재범률을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을 통하여 2019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20%로 나타났다(Yukhnenko, Sridhar, & Fazel, 2019). 이 연구는 노르웨이의 재범률이 낮은 이유는 재활에 집중하는 형사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진은 특히 노르웨이의 수용자처우 정상성원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Tønseth 등이 노르웨이 교도소의 정규교육이 수용자의 직업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명확한 사고를 하는 의사결정자’로서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ønseth, Bergsland, & Hui, 2019; Hoggan, 2015).

2012년 10월에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노르웨이 전체 교도소 수용자 2,439명 가운데 52.3%인 1,276명을 대상으로 교도소 교육의 참여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Roth, & Manger, 2014). 교도소 교육 참여 동기는 미래 계획, 교도소 규정 및 시간 보내기(도피), 능력개발 중에서 선택하도록 설계된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동기는 미래계획으로 나타났다. 형기가 길수록, 그리고 석방이 가까울수록 능력개발이 더 큰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교도소 교육과 수용자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대상자들은 독해력, 수학, 정보통신기술(ICT), 자기주도적 학습 등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경력이 없는 수용자들은 모든 교육영역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었다(Roth, Asbjørnsen, & Manger, 2016).

V.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시사점

1. 정상성원칙의 추구

노르웨이는 형집행법 및 교육법 등에 따라 교정시설의 처우는 정상성원칙(Normality Principles)을 추구한다. 정상성원칙은 수용자의 교육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정상성(Normality)이란 구금형은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 이지 시민으로서의 수용자의 다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을 성립시킨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수용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만을 제한당하며, 형집행법상 보안(Security)을 해치지 않는 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기본원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성원칙은 교도소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교도소에 설치된 교도소 학교는 일반 초중고교와 가장 유사한 시설과 교사, 그리고 교과목체계 등을 갖추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정상성원칙은 한국의 경우 수용자 교육이 직업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강사진 역시 교정당국이 지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교정당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교정본부, 2023: 138-142).

2. 수입모델원칙의 실천

노르웨이 교정처우의 기본원칙인 수입모델원칙이 교도소 교육에 충실히 반영되었다. 즉 수용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만 제한될 뿐 나머지 시민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르웨이 정부 혹은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교육, 의료지원, 교육훈련 등은 모두 교정당국 이외의 행정당국이나 외부기관이 직접 운영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 교육의 책임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교도소 인근 고등학교 교사가 일반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수용자가 검정고시나 자격증 시험 준비를 희망하는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고, 교정당국은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실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한국 역시 전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므로 취학 연령대 수용자와 취학 연령대는 지났지만 늦게라도 의무교육을 희망하는 수용자에 대한 관련 교육과정의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수용자의 유연한 배치전환과 교육과정 운영

노르웨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평균 형량은 약 8개월이며, 부가조건이 없는 구금형의 60% 이상이 최대 3개월이며, 나머지는 거의 90%가 1년 미만이다(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2018). 교정당국은 수용자 분류심사를 통해 중보안교도소를 거쳐 경보안교도소 그리고 중간처우교도소, 그리고 보호관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복귀 능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도록 쳐우한다.

노르웨이는 수용자가 보안심사를 거쳐 다른 경보안교도소나 중간처우교도소로 이송되더라도 수입모델원칙을 통한 일반 초중고교과정의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각 교도소에 배치된 교육조정관(Discipline Coordinator)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근 교도소 학교로의 통학을 허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시설로의 통학 등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노르웨이 교정당국의 수용자 교육의 유연성 및 지역사회 교육시설의 활용과 연계 등은 수용자 탈주나 보안(Security)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수용자 교육을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비교된다(교정본부, 2023: 138-142).

4. 외국인 수용자 교육기회 부여

노르웨이 형집행법 및 교육법 등은 외국인 수용자에게도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교도소의 외국인 수용자 교육은 교육조정관의 상담 및 교도소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된다. 교육은 노르웨이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며, 이는 유럽교도소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외국인 수용자 교정교육은 한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즉 한국의 경우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등의 교육시간이 대부분이다. 외국인 수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형기 역시 1년 이상 수용자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외국인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법무연수원, 2023: 388-392).

5. 복귀보증제 실시

노르웨이는 교도소 수용자의 출소 이후에 필요한 사회복지, 주택, 직업, 교육 등에 관한 정보와 실제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른바 복귀보증제(Return Guarantee)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특히 수용자가 교도소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직업교육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 등은 출소 후에 계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복귀보증제는 수용자의 권리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교도소에는 담당관이 배치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되는 수용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출소 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제도와 연계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용노동부, 직업훈련,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do> 2023. 9. 5. 검색).

VI. 나아가며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르웨이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수용자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할 뿐 나머지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수용자 인원의 정상성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수용자 교육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의무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필수적 교육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둘째, 노르웨이는 교도소별 교도소 학교를 통하여 일반시민과 동등한 초중고교과정을 인근 고교교사에 의하여 운영하며, 학비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수입모델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특별히 지정된 교도소에서만 방송통신고교나 방송통신대학 등의 과정이 가능한 것과 비교가 되며, 한국의 경우에도 수용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노르웨이는 중구금교도소에서 경구금교도소, 그리고 중간처우 교도소로의 이송 등의 배치전환 과정을 거치며 수용자 교육과정이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특정교도소에서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되며, 한국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 모든 교도소에서 의무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르웨이는 교정처우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자 교육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매우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수용자에게도 특별한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증가하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육 법령의 정비 및 교육기회의 확대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다섯째, 노르웨이는 복귀보증제의 일환으로 출소 후에도 교도소 교육을 지역사회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이기도 하며, 이러한 연계

시스템이 결국 수용자의 재활을 돋는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수용자 재활과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복귀보증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교정본부, (2023). 「2023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 법무연수원, (2023). 「2022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국외 문헌]

- Byholt, V., Bakke, G. E., & Ianke, P. (2017). Career guidance in the Norwegian Correctional Service: results from a survey among counsellors in the prison education system.
- Breivik, P., (2020). Education for inmates in Norwegianprisons - obstacles and opportunities under COVID-19 restrictions, https://uil.unesco.org/system/files/norway_prison_ed.pdf/
- Breivik, P., (2022). https://www.ucu.org.uk/media/12436/Pal-Breivik/ppt/The_Norwegian_education_system_in_prisons_Paal_Breivik.pdf/
- Christie, N., Modeller for fengselsorganisasjonen i "I stedet for fengsel" Pax, 1970.
- EPTA, (2019). Basic training for correctional officers, <https://url.kr/6gy9i4> Firststepalliance, What We Can Learn From Norway's Prison System: Rehabilitation & Recidivism, <https://url.kr/6gy9i4>
- Hoggan, C. (2015). Bringing clarity to transformative learning research.
- Holdaway, S. (2017). The re-professionalization of the police in England and Wales.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7(5): 588-604.
- Langelid, et.al. (2009). Nordic Prison Education-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Copenhagen
- LOVDATA, (2020), Act relating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the Education Act), <https://lovdata.no/dokument/NLE/lov/1998-07-17-61/> 2
- Lunde, K., Research-Based Evaluation of education in Norwegian Prisons, County Government of Hordaland, (2004).
-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xecution of Sentences, (2018). <https://url.kr/n5tk4o>
- Norwegian Maritime Authority, (2018). <public-administration-act.pdf/>
- 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2018). Punishment That Works—Less Crime—A Safe

Society: Report to the Storting on the Norwegian Correctional Services (English Summary). Federal Sentencing Reporter, 31(1): 52-57.

- Roth, B. B., & Mang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prisoners' educational motives and previous incarceration, sentence length, and sentence served. London review of education, 12(2): 209-220.
- Roth, B. B., Asbjørnsen, A., & Manger, T.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Prisoners' Academic Self-Efficacy and Participation in Education, Previous Convictions, Sentence Length, and Portion of Sentence Served. Journal of Prison Education and Reentry, 3(2): 106-121.
- Santora, L., Espnes, G. A., & Lillefjell, M. (2014). Health promotion and prison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Prisoner Health.
- Tønseth, C., Bergsland, R., & Hui, S. K. F. (2019). Prison education in Norway-The importance for work and life after release. Cogent Education, 6(1), 1628408.
- World Prison Brief. (2023). Norway, <https://url.kr/xuaycs>
- Yukhnenko, D., Sridhar, S., & Fazel, S. (2019). A systematic review of criminal recidivism rates worldwide: 3-year update. Wellcome open research, 4.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개최



일시·장소 10. 5.(목) 15:00, 법무부 대회의실

참석자 (법무부) 장관, 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등
 (외부위원) 임대기 前 대한육상연맹회장 등 위원 10명

거창구치소 개청식



일시·장소 10. 18.(수) 11:00, 거창구치소

참석자 장관, 본부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 200여 명

말라위 교정본부장 방문



일시·장소 10. 6.(금) 10:30, 본부 회의실

참석자 (내부) 본부장, 보안정책단장 등
 (말라위) Wiscot Masauko 말라위 교정본부장 등 5명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일시·장소 10. 27.(금) 10:00,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

참석자 장관, 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수상자 등 800여 명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전광호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금천구 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제52주년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정병현 청장은 전시회를 위해 노력한 수용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서울구치소는 10월 16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년 간의 임기 동안 운영되며,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외부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수, '교정기관 음란도서 차단 대책' 안건에 대한 논의, 시설 참관 등을 진행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홍연 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달견을 반영해 수원구치소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교정시설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0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임원 9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임원들에게 교정행정 전반을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 진행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천구치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정병현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0월 11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날 정병현 청장은 중앙통제실과 자치수용동, 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를 돌아보며 수용관 리 실태 전반을 확인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정부 정책 소통 교육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27일 적극행정 및 정부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소통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조영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0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

성됐으며, 위촉식 후 자문위원들은 '교정기관 음란도서 차단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주교도소 | 교사 양종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류동수 소장은 "여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자문과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제78주년 교정의날 기념 직원 음악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10월 25일 제78주년 교정의날 기념 직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한국사법연구회가 주최했으며,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의 바이올린 협주를 시작으로 휴란 클래식 앙상블의 클래식과 가요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직원 건강검진 실시

춘천교도소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진받은 직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질환이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돼 다행이며, 이를 계기로 좀 더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원주교도소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목공 부문에서 동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KCS_TV)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November + Vol. 570

강릉교도소 | 교감 전홍재

교정시설 참관 실시

강릉교도소는 10월 17일 교정동우회 강릉지회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퇴직한 교정공무원에게 변화된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영월교도소 | 교위 김한진

교정시설 참관 실시

영월교도소는 10월 5일 영월 상동중학교, 24일 영월 쌍용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에게 교정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교정시설 참관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10월 27일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을 통해 직원 가족들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정기관의 인식을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0월 18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성호 지소장은 위원들과 함께 교정행정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소망교도소 | 8직급 황재민

교정시설 참관 실시

소망교도소는 10월 17일 말라위 교정국장을 대상으로 참관

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대한민국 민영교도소 및 교정행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시온

문화체육행사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10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수목원에서 진행됐으며, 직원 간담회를 실시해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교정공무원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대구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남주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부산구치소는 10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부산구치소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기관 사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

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창원교도소 | 교도 김시진

찾아가는 문화재 공연 개최

창원교도소는 10월 18일 수용자와 직원 및 교정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문화재 공연 ‘들국화처럼 향기롭게’를 개최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윤

직원 건강검진 실시

부산교도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작업성 질환을 사전 확인하고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추진됐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미술 작품 초대전 개최

포항교도소는 10월 4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전을 개최했다. 주정민 소장은 “해오름 갤러리의 미술 작품이 방문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영근

직원 사격 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10월 23일 사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직원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개인화기 조작 및 사격 능력 배양을 목표로 실시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재원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대구구치소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영광 소장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박성국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10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청송진보병원 장세량 행정원장 등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민·관 상생 방안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조남영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10월 10일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과별 자원자 7명이 참여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벼 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상용 소장은 “앞으로도 일손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0월 16일 신규 직원 14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강성현 소장은 “공직의 첫 발걸음을 축하하며 중경비시설에서의 경험을 쌓아 책임감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교정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교정시설 참관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10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 서부지소 직원 및 보호위원 13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0월 16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조관성 소장은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며 교정의 발전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업무협약 체결

울산구치소는 10월 13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용자 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성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주교도소는 10월 5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과 시설 운영, 수용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통영구치소는 10월 5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정정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정인식 소장은 “교정정책에 대한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KCS_TV)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November + Vol. 570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업무협약 체결

밀양구치소는 10월 23일 밀양소방서와 화재 및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정시설 내 화재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상주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정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개청식 개최

거창구치소는 10월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거창 지역주민 50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건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을 실시했다. 이번 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말라위 교정국장 참관 실시

대전교도소는 10월 19일 아프리카 말라위 교정국장을 대상

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교정본부와 아프리카 말라위 교정국의 업무 협력 및 친선 도모를 위해 이뤄졌으며, 가족접견실, 중앙통제실, 노인수용동 등을 둘러봤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청주교도소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타일 부문에서 은상 2개, 우수상 1개를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천안교도소 | 교도 이철희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백석대학교 박종선 교수(위원장), 최병열 변호사, 오강환 전 교정공무원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차소민
직원 사격 훈련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25일 공군사관학교 내 사격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총기 조작 및 사격

술 연마를 통한 교정시설 자체 방호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0월 11일 공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신용해 본부장은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직원 복지시설, 수용동, 작업장 등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직원 목욕탕 리모델링 완료

충주구치소는 10월 23일 직원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건물 내구성 향상과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새 단장을 마친 직원 목욕탕은 개인위생을 넘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10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조규홍 변호사 등 자문위원 7명은 위촉식이 끝난 후 교정인식 제고 및 교정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

을 위해 설치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0월 16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제환국 지소장은 “항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늘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웅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0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등을 위해 출범했으며, 대학교수, 변호사, 논산시의회 의원, 관계기관 추천인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정영선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0월 26일 광주송정역 야외 광장에서 광주지역 유관 기관장과 교정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김동현 청장은 “이번 전시회가 교정시설과 수용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 | 교위 박선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광주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외부위원은 교정정책과 민간 협력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최규철 소장은 “위원회 운

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10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전북대학교 김태명 교수(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박경선 소장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정의와 상식의 교정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순천교도소는 10월 2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정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종곤 소장은 “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목포교도소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심리상담, 피지컬 케어, 커피 트릭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군산교도소는 10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인사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오우정 소

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제주교도소는 10월 4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배경석 소장은 “지역사회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장흥교도소는 10월 10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조병주 소장은 “교정행정에 외부 유관기관의 자문이 더해져 수용자 처우 개선 및 교정행정이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해남교도소는 10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인사 및 교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정읍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 교위 표영수

표영수 교위는 2001년 임용 후 약 22년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와 개별처우에 힘쓰고 격무지인 조사·징벌 수용동을 담당하며 수용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교정사고를 유발하는 수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그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정참여 인사와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통영구치소 교사 문혜지

문혜지 교사는 불의의 사고로 별세한故 한상래 교위의 순직 인정 및 순직유족 급여 승인을 위해 약 6개월간 관련 업무에 매진하는 등 직원복지 향상 및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기록물 담당 업무를 맡아 기록물 서고와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위 최규남

최규남 교위는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생활지도 실시, 불우한 수용자 중 수용 생활 지원금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법과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근무를 통해 수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읍교도소 교위 김정석

김정석 교위는 보안과 기동순찰 담당자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근무자세로 기관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이입 수용자 물품검사 중 수용자가 은닉한 정신과 약 176정을 발견해 압수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제복근무자 집중 감사 캠페인 2023.10.1.~11.30.

독자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8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도토리



꽃



우산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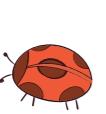
나뭇잎



앵두



사과



무당벌레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발송

대한민국은 제복근무자를 ○원합니다



국가보훈부



QR코드를 찍어서
만화로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우리의 히어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제복근무자에 보답하고자

전국 6개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의 용기에 자부심을 더해 드릴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따스한 섬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면율 및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세부내용	감면율
군인	장기복무(10년이상 현역복무) 제대군인 현역 군장병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경찰공무원	현직 경찰공무원 경찰 소속 행정공무원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해양 경찰공무원	현직 해양 경찰공무원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소방공무원	현직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법무공무원	현직 법무공무원(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